

隋唐五대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朴炫局·金基郁·鄭城采

关于隋唐五代的醫政史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朴炫局·金基郁·鄭城采

隋唐五代时代跟医学发展有关的政策、机构、制度等逐渐完备了。这时期由政府发展医学教育的政策值得医政的功绩。

定规医学教育的方面上设置专科医、安排教育课程、任用考试等具备具备了医学教的规模，另外发展了地方医学教育和医学普及。颁布医方和地方要路上打着处方的措施对百姓医疗提供方便，也影响了医学知识的普及。

这时期医政上最显著的成果是提高本草学的地位的。太医署内设置了医学教育同时设置了专门药学教育。而且政府以编修本草书籍并颁布全国为最初的药典。

这时期由政府法制化了医药管理方面的也是大大收获。隋唐以前没形成医药管理和有关制度、规模。医生根据一定的法律跟患者联系并严加拘管自己。

隋唐五代医政很多方面上卓有成效，但是宫廷医药机构的规模很庞大、人员过剩，亦宫廷医官受控制，不能发挥自己的能力。也不能发展为百姓的医药机构。因为政府不太重视医学，所以医生的地位仍是不高。那就是这时期医政的缺点。

中心語：隋唐五代，醫政，太醫署，專攻醫，師·工·生，藥園，藥典，醫方頒布，本草書籍編修，醫藥管理法制化，宮廷醫藥機構，地方醫學教育，醫生地位

I. 序論

본 논문은 大韓韓醫學原典學會紙 19권 Vol.2에 기고한 「秦漢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 「魏晉南北朝의 醫政史에 관한 연구」와 19권 Vol.3에 기고한 「兩宋시기 醫政史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中國의 梁峻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한 연속적인 연구 성과이다.

隋唐五대의 醫政史에 관하여 論者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方面의 탐색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첫째. 隋唐五代 시기의 정치 개요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둘째. 이 시기에는 方士·巫術을 기피하고 醫藥발전을 중시됨, 醫藥 도량형을 통일시킴, 醫方의 반포와 醫方지식 보급, 醫官의 사회적 지위 제고, 보건위생 方面의 제도와 율령을 제정, 傷害의 輕重에 따른 율령, 기술자·노비·囚人 등의 醫藥 관리에 대한 율령, 疫病에 대한 정책, 사회적인 구휼정책 제정의 方面의 연구를 통하여 醫政정책이 점차 완비되는 분야를 정리하기로 한다.

셋째. 이 시기의 醫藥기구와 제도의 완비에 있어, 醫政구조의 특징, 宮廷 醫藥기구와 기능, 地方醫政과

* 교신저자 : 박현국,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054-770-2370, pakkhg@dongguk.ac.kr

의학교육, 患坊과 陵墓寺院의 의약, 隋唐五代의 軍醫 조직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넷째. 이 시기의 의약정책과 의약발전과의 관계에 있어, 의학교육정책이 의학 발전을 촉진시킴, 국가가 주관한 약학교육과 官修本草 정책은 약물학의 진보를 촉진, 정부가 주도한 의서의 편찬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다섯째. 수당오대시기의 의정의 평가와 의정형성의 원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 본 논문의 사고전서 인용부분의 페이지 표시방법 중 ‘*’는 사고전서 페이지가 123-456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회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123*456의 형태로 표기하였음.

II. 本 論

1. 隋唐五代 시기의 정치 개요

이 시기는 隋·文帝 開皇 元年(581년)부터 宋·太祖 乾隆 元年(960년)까지 379년이다. A. D. 581년에 北周의 실권을 장악한 외척 楊堅이 北周 정권을 찬탈하여 隋를 세우고, A. D. 589년에 南晉을 멸망시켜 다시 중국을 통일시켰다. 隋·文帝는 정치체도를 개혁하여 중앙에 三省六府制를 확립하고 지방 기구를 점차 감소시켜 州, 縣을 설치하였다. 府兵制를 개혁하고 九品中正制를 폐지하고 科擧制와 律令을 제정하여 중앙집권적 정치체도를 새로운 단계로 제고시켰다. 文帝는 均田制, 大素貌閱, 輸籍法을 실행하여 생산을 촉진시켰다. 煬帝에 이르러서 무능력하고 부패하여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 정권이 점차 몰락하였다.

A. D. 617년에 太原留守 李淵이 군사를 일으켜 長安을 점령하여 A. D. 618년에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唐이라 하였다. 이후 7년 동안 각지의 지주 무장 세력을 평정하고, 竇建德·杜伏威 등 農軍을 진압하여 전국을 통일하였다. A. D. 626년에 李淵의 둘째 아들 李世民이 궁성의 玄武門에서 정변을 일으켜 建成을 살해하고 李淵을 옹립하였다. A. D. 627년에 연호를

貞觀으로 바꾸었다. 李世民은 隋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였으며 부역과 징발을 경감하여 정치를 안정시켜 사회경제가 공전의 번영을 이루어 이른바 “貞觀之治”를 형성하였다. 唐은 隋의 제도를 따르면서 개혁을 추진했다. 중앙의 三省六府制는 더욱 강화 완비시켰고 三省이 연합하여 公廳의 업무인 政事堂이 성립되었다. 또한 翰林學士院과 內樞密院을 설립하여 권력의 집중을 강화시켰다. 지방에 州, 縣을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시켰고 貞觀 元年에는 전국을 10道로 나누어 巡按使를 두고 관리를 감시하였다. 이후 道는 점차 州 위의 상층 최고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唐은 변방에 都督府를 설치하고 節度使를 두어 군사력을 장악하였다. 唐代 중엽 이후에는 內地에도 節度使를 두었다. 당대에 科擧制가 완비되었다. 과거는 常擧와 制擧로 나뉜다. 高宗과 則天武后가 통치한 55년 동안 “進士就達到一千餘人.”¹⁾이었다. 또한 대량의 선비들을 관리로 선발하였다. 법률, 사법, 감찰제도는 더욱더 발전되어 완비되었다. 唐代 후기에는 均田制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府兵制는 募兵制로 대체되었다. 후에 節度使가 스스로 병사를 모집하여 점차적으로 강대한 봉건할거세력을 형성하였다. A. D. 755년에 安史의 난이 일어났다. 8년에 걸쳐서 唐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환관이 세력을 쥐고 필요에 따라 황제를 옹립하였다. 牛李黨爭은 조정 내부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A. D. 907년에 朱溫이 唐·哀帝를 폐위시키고 開封에 後梁을 건립하였다. 이후 中원 지역에 앞뒤를 다투어 後唐, 後晉, 後漢, 後周 등 여러 왕조가 생겨나고 교체되었는데 이를 역사에서 五代라 칭한다. 이와 동시에 남방에는 吳, 吳越, 前蜀, 楚, 閩, 南漢, 荊南, 後蜀, 南唐 등 9개의 작은 왕조가 건립되었다. 太原에 건립한 北漢을 합하여 十國이라 칭한다. 이 시기 분열된 나라의 정치체도는 기본적으로 唐의 것을 답습하였고 군사지휘기구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최고 군사기구는 樞密院이었다. 이 시기에 남방 소국들의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中원에서는 왕조가 빈번하게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

1)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40.

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 D. 960년에 趙匡胤이 陳橋驛에서 군사 반란을 일으켜 A. D. 979년에 중국을 통일하였다.

379년간의 隋唐五代는 五대의 짧은 혼란기를 제외한 나머지 300여 년 동안은 대체로 안정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흥성한 시기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국가가 통일되고, 국토가 확대되고,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가 번영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중국과 외국과의 문화가 교류되고, 儒學이 다시 부흥하고, 불교와 도교가 유행하는 등등이 이 시기의 가장 주된 특징이다.

2. 의약정책이 점차 완비됨

1) 方士, 巫術을 기피하고 의약발전을 중시됨

수당시기에 국가의 통일로 위진남북조를 통하여 오랜 혼란한 국면이 종식되고 중앙집권 정부가 다시 태어났다. 황제의 권력은 여전히 隋唐 황제가 장생불로를 바라는 천연적인 토양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사회는 秦始皇과 漢武帝 시대로부터 7-8세기가 흘렀다. 神仙, 妖巫의 영향은 秦漢시기에 흥성하던 때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했고, 또한 醫藥學이 이 시기에 비교적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수당의 통치자는 역사적인 경험을 되새겨 몸소 실천하고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方士, 巫術을 멀리 배척하고 의약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향하였다. 따라서 의학발전의 규율에 부합되는 일련의 정책과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이 시기에 의학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唐代 초기인 貞觀 元年 정월에 太宗이 측근에게 “神仙事本虛妄空有其名. 秦始皇非分愛好, 遂爲方士所詐, 遣童男女數千人隨其入海求仙藥. 方士避秦苛虐, 因備不歸, 始皇猶, 海側以待, 還至沙丘而死. 漢武帝爲求仙乃將女嫁道術人, 既無驗便行誅戮. 既此二事, 神仙不煩妄求也.”²⁾라 하였다. 太宗은 신선을 믿지는 않았으나 그 역시 장수하려는 욕망에 浮屠那羅邇婆寐가 만든 靈花怪石을 복용하여 큰 병을 길렀다.

2) 李昉 等奉勅撰. 太平御覽 卷109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899*448.

高宗이 집정할 때 “染風痺, 以宮內湫濕乃修大明宮改名蓬萊宮. …… 稅延雍 …… 魏絳 …… 等十五州 …… (還)減京官一月俸祿, 助修蓬萊宮. …… ”³⁾하였고, “時浮屠盧伽逸多治丹, 曰: ‘可以續年.’ 高宗欲, 遂餌之. 處俊諫曰: ‘修短固有命, 異方之劑, 安得輕服哉?’ 昔先帝詔浮屠那羅邇婆寐, 案其方書爲秘劑, 取靈花怪石, 曆歲乃能就, 先帝餌之, 俄而大漸, 上醫不知所爲, 群臣請顯戮其人, 議者以爲取笑夷狄, 故法不得行; 前鑑不遠, 惟陛下深察. 帝納其言.”⁴⁾하였다. 高宗은 간언을 받아들여 丹藥 복용을 피하고 병의 치료와 장수의 희망을 의약에 의탁하였다. “高宗末年, 苦風眩頭重, 目不能視, 則天幸災逞己志, 潛遏絕醫術, 不欲其愈. 及疾甚, 召侍醫張文仲, 鳴鶴診之, 鳴鶴曰: ‘風毒上攻, 若刺頭出少血, 則愈矣.’ 則天帝中怒曰: ‘此可斬, 天子頭上是試出血處耶?’ 鳴鶴叩頭請命, 高宗曰: ‘醫之議病, 理不加罪. 且我頭重悶, 殆不能忍, 出血未必不佳. 朕意決矣.’ 命刺之. 鳴鶴刺百會及腦戶出血. 高宗曰: ‘吾眼明矣.’ 言未畢, 則天自帘中項禮以謝鳴鶴曰: ‘此天賜我師也.’ 躬負繒寶以饋之.”⁵⁾하였다. 太宗, 高宗 등의 황제들은 간언을 받아들여 方士, 巫術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唐代 초기에 의학발전이 큰 차질이 없었다.

唐代 중기에 의학에 대한 方士, 巫術의 방해가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당대 중기에 의학은 올바른 궤도에 따라 발전하였다. 특히 玄宗 때에는 卜筮로 사람을 미혹케 하는 것을 금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古之聖王, 先禁左道, 爲其申政, 犯必加刑, 至如占相吉凶, 妄談休咎, 假託卜筮, 幻惑閭閻, 矜彼愚蒙, 多受欺誑, 宜申明法令, 使有懲革, 自今已後, 緣婚禮喪葬卜擇者聽, 自餘一切禁斷”⁶⁾하였다. 筮를 금하는 조치는 의학발전이 불리한 영향을 배제시키는 데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3) 王溥 撰. 唐會要 卷3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412.
4) 歐陽修·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11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4*456.
5) 唐·劉肅. 唐新語 卷9 文淵閣四庫全書·子部·小說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035*369.
6)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159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4*780.

당대 말기에 이르러 神仙, 方術의 설로 황제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과 황제에게 간언하여 이러한 것을 막는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憲宗시기에 “元和五年八月, 上謂宰臣曰: 神仙長生之說可信乎? 李藩對曰: 神仙之說 …… 深鑑流弊, 斥遠方士, 則百福自生.”⁷⁾이라 하였다. 계속 간언하였지만 憲宗은 장생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않았다. 憲宗 말년(820년)에 “詔天下搜訪奇士, 皇甫鏞·李道古乃薦泌(即柳泌)及僧大通等待詔翰林. 憲宗頗奇, 因盛言天臺多靈草, 群仙所會, 臣嘗知之而力不能致, 願假郡縣之權以求之. 憲宗以爲然, 乃授臺州刺史, 賜服金紫. 或諫曰: 方士不當假以州郡之政. 憲宗怒曰: 煩一郡之力而致神仙不死之事, 臣下于吾何惜焉? 繇是不敢復諫. 泌到州, 驅使人于山谷聞聲言采藥, 鞭撻慘急. 歲餘一無所得. 懼詐發獲罪, 遂挈其家潛入山谷 …… . 京師鏞與道古保明其能, 又詔直翰林院, 憲宗服泌藥, 日益躁渴, 竟爲所誤. …… 初, 柳泌系于京兆府, 吏人或問曰: 何苦虛詐如此? 泌曰: 皆道古教我, 且令我自言四百歲. …… ”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憲宗을 다시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에 대신과 시종이 때맞춰 간언하기를 “去年以來, 諸處薦藥術之士, 有韋山甫, 柳泌等, 或更相稱引. 迄今薦送漸多. 臣伏見以眞仙有道之士, 皆匿其名姓, 無求于世, 潛道山林, 更影雲霓, 唯恐人見, 唯恐人聞, 豈有干謁公卿, 自粥其術. 今者所奏, 有夸言其藥術者, 必非知道之士, 咸爲求利而來. 自言飛煉爲神, 以誘權責賄賂, 大言怪論, 驚聽惑時, 及其假僞敗露, 曾不耻于遁逃, 如此情狀, 豈可深信其術, 親餌其藥哉?”⁹⁾라 하였다. 裴潏도 憲宗이 柳泌가 지어준 약을 먹고 躁病으로 갈증을 호소할 때 “ …… 柳泌等以丹術自神, 更相稱引, 詭爲陛下延年 …… 豈可信厥術御其藥哉? …… 先帝冕節喜方士, 累致危疾, 陛下所可知, 不可蹈前伏, 迎後悔也”¹⁰⁾라 간언 하였다. 대신과 시종 등이

강력하게 간언하여 憲宗이 냉정을 되찾게 하고 장생의 욕심을 억제시켜 보다 큰 규모로 선약을 찾는 활동을 근절시켰다.

이상을 종합하면 唐代 황제들이 일반적으로 仙藥을 복용하여 장생을 구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방사가 지어준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方士, 巫術이 황제와 백성에게 끼친 폐단의 정도는 秦漢이나 위진남북조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의학을 포함한 자연과학이 이 시기에 크게 발전되어 사람들의 자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당대 황제들은 자연과학의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아들였다. 게다가 대신과 시종들이 方士와 巫術을 멀리하라고 간언하여 황제가 진시황과 漢武帝의 전철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方士와 巫術이 제왕과 백성 속에서 자리 잡아 의학발전에 장애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에는 황제 및 정부는 의학발전을 상당히 중시하였기 때문에 잇달아 반포하여 시행한 일련의 의약정책 조치는 의학발전을 추동시켰다.

2) 의약 도량형을 통일시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 한 후 도량형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의약의 도량형 역시 이미 표준이 있었다. 西晉·元康시기에 裴頤가 “今尺長于古尺”¹¹⁾, “稱兩不與古同”¹²⁾이라 하여 도량형 개혁을 건의하였다. 동시에 “若未能悉革, 可先改太醫權衡”¹³⁾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改今而從古”¹⁴⁾하는 것이었다. 옛 도량형에 따름으로써 도량형의 차이에 따른 의료의 편차를 효과적으로 피하였다.

7) 王溥 撰. 唐會要 卷5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660.

8)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924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18*427.

9) 王溥 撰. 唐會要 卷5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708.

10) 歐陽修·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11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4*500.

11) 孫人龍 撰. 晉書 卷5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864.

12) 孫人龍 撰. 晉書 卷1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288.

13) 孫人龍 撰. 晉書 卷3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628.

14) 孫人龍 撰. 晉書 卷5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5*864.

唐·玄宗 開元 8년(720년) 9월에 내린 칙령에서 “權衡度量并 …… 雜令, 諸度, 以北方秬黍中者一黍之廣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三尺爲大尺. 諸量, 以秬黍中者容一千二百粒爲倉, 十倉爲合, 十合爲升, 十升爲斗, 三斗爲大斗, 十斗爲斛. 諸權衡, 以秬黍中者百黍之重爲銖, 二十四銖爲兩, 三兩爲大兩, 十六兩爲斤. 諸積秬黍爲度量權衡者, 調鐘律, 測晷景, 合湯藥及冕服制用之處. 官私悉用大者, 京諸司及諸州, 各給秤尺及五尺, 度斗, 升, 合等樣, 皆銅爲之. 關市令, 諸官私斗, 尺, 秤, 度, 每年八月詣金匱太府寺平較. 不在京者, 皆所在州縣平較. 并印署然後聽用”¹⁵⁾하게 하였다.玄宗의 이러한 정책은 도량형을 전국적으로 재차 통일시켰다. 의학의 도량형도 상응하여 표준이 되는 규범이 있었다.玄宗 때에 통일시킨 도량형을 후대에서도 오랫동안 이어받아 사용하고 보존하였다.

100여 년 후에 唐末 文宗시기에 가짜 도량형은 만드느 자들이 있어 大和 5년(831년) 8월에 “太府奏斗秤舊印本是眞書, 近日以來, 假偽轉甚, 今請省寺各撰新印改篆文. 勅旨宜依 …… 每年較勤, 合守成規 …… 不得致于差殊.”¹⁶⁾하러 하였다. 당대 도량형의 통일은 의학 경험의 교류와 문헌 정리연구 등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3) 醫方의 반포와 의학지식 보급

수당오대시기에 통치자들은 백성의 의료보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仁政을 표방하여 태평성대를 과시하려는 것 이외에 같은 왕조에서도 황제에 따라 의료에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채택한 정책도 달랐다. 이 시기의 황제들 가운데 唐·玄宗 李隆基, 唐·德宗 李適, 五代 後唐 말의 황제 李從珂 등이 의학지식을 보급한 정책이 높이 살만하다. 이들은 北魏의 경험을 계승하여 민간에게 醫方을 반포한 시책은 의학의 대중화를 제고시켰다.

玄宗은 “開元十一年(732년)九月七日, 親制廣濟方頒示天下”¹⁷⁾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할 것

을 염려하여玄宗은 天寶 5년(746년) 8월에 “朕頃所撰廣濟方, 救人疾患, 頒行已久, 計傳習亦多, 猶慮單貧之家, 未能繕寫, 閭閻之內, 或有不知, 倘醫療失時, 因致橫夭, 性命之際, 寧忘惻隱. 宜令郡縣長官, 就廣濟方中逐要者, 于大板上件錄, 當村坊要路榜示. 仍委采訪使勾當, 無令脫錯”¹⁸⁾하러 칙령을 내렸다.玄宗이 백성에게 의방을 반포한 시책은 후대 황제들이 본받았다.

唐·德宗 李適이 집정한 시기는 의학지식의 보급을 비교적 중시하였다. 貞元 12년(796년) 2월 13일에 德宗이 廣利方을 반포하고 “立國之道, 莫重于愛民, 育物之心, 期臻于壽域. 故安其性命, 順其節宜, 使六氣不差, 百疾不作, 斯救人之要也. 朕以聽政之暇, 思及黎元, 每慮溫淫不時壅鬱之癘, 或僻遠之俗難備于醫方, 或貧匱之家有虧于藥石, 失于救療, 遂至傷生. 言念于茲載深優軫屬, 春陽在侯, 寒暑之交, 閭里之間頗聞, 疾患每因服餌尤感予衷. 遂閱方書, 求其簡要, 并以曾經試用果驗其功, 及取單方務于速效, 當使疾無不差, 藥必易求, 不假遠召醫工可以立救人名. 因加纂集, 以便討尋, 類例相從, 勤成五卷, 名曰貞元集要廣利方. 宜付所司即頒下州府, 閭閻之內, 咸使聞知.”¹⁹⁾하러 칙령을 내렸다.

당대에 민간에게 반포한 의방 등의 조처는 五代가 계승하였다. 五代·後唐 清泰 3년에 대신 和凝이 醫學을 설치할 것을 주청하였다. 그는 “自貞觀之朝, 則廣開醫學. 及開元之代, 則采制方書. 愛在明朝, 宜遵故事. 方今喧熇在近, 疫癘是虞, 言念軍民, 宜加軫閱. 其邊遠戍卒及貧下農人, 既難息于苦辛, 宜偶繫于疾患. 地僻既無藥物, 家貧難召醫師, 遂至疾深, 多懼物故, 荷戈執來, 皆展力于當年, 問疾賜醫, 宜覃恩于此日. 其諸處屯戍兵士, 令太醫署修合傷寒時氣瘡痢等藥, 量事給付大軍主掌, 以給有病士卒之家. 百姓亦準醫疾, 令和合藥物, 救其貧戶. 兼請依本朝州置醫博士令, 考尋醫方, 合

15) 王溥撰. 唐會要 卷6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851.
16) 王溥撰. 唐會要 卷6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851.

17) 王溥撰. 唐會要 卷8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255.
18) 宋敏求編. 唐大詔令集 卷1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800.
19) 宋敏求編. 唐大詔令集 卷1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800.

和藥物, 以濟部人. 其御制廣濟廣利等方書, 請翰林醫官重校定, 頒行天下.”²⁰⁾하도록 청하였다. 마지막 황제 李從珂는 和凝의 상소를 허락하여 이상의 시책은 곧 관철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수당오대 시기에 방약을 반포한 시책들은 의학지식의 전파와 의학교육의 보급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고 백성들의 의학 수요에 편리를 도모하였다.

4) 의사의 사회적 지위 제고

(1) 의사에 대한 제제가 전환되었다

고대 사회 초기에는 의사의 지위가 비교적 낮았다. 황제와 황후, 皇子의 질병을 치료하여 관직에 나아가거나 금전적인 혜택을 입은 의사들이 왕조마다 많이 있었지만 失治, 오진 혹은 황실 사람에 대한 언행의 실수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수당오대에는 의사가 임의로 제책을 받는 형세가 어느 정도 바뀌었고 사회적 지위도 제고되었다.

唐末 順宗, 穆宗, 文宗, 武宗, 宣宗, 懿宗, 僖宗 등은 의사를 비교적 존중하였고, 특히 그들을 시중드는 醫官의 거취나 상벌에 대해 비교적 신중히 하였다. 이들 황제들이 내린 조칙에서 의관을 보호하고 죄를 묻지 않도록 하였다. 文德 元年(888년)에 僖宗은 遺詔에서 “醫官及技術人等, 晝夜勞苦, 知無不爲, 宜各安存, 勿勿加罪噫”²¹⁾라 하였다. 懿宗 咸通 11년에 同昌 공주가 죽자 “以翰林醫官韓宗邵等用藥無效, 系之獄, 宗族連引三百餘人. 宰相劉瞻召諫官上疏, 諫官無敢言之者, 瞻乃自上章極言, 帝怒, 貶爲瓠洲刺史.”²²⁾하였다. 그러나 咸通 14년에 내린 조칙에서 분명히 “其官醫段璩、趙玘、符虔休、馬伋等并釋放.”²³⁾하라고 하였다. 懿宗은 공주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림의관에게 죄를 물어 하옥시키고 수백 명을 잡아들여 이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잔혹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조칙을 내려 의관에게 죄를 묻지 말고 석방시킨 것은 의사를 대우하고 보호하려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唐末인 順宗에서 僖宗에 이르기까지 황제들이 내린 조칙에서 나타난 의사를 보호하는 정책방향 및 사회에 끼친 영향은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상술한 황제들 가운데에는 단명하거나 어떤 황제는 무력하여 생전에 실제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린 조칙은 정부 문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여전하였다. 그러므로 唐末에 의사들이 함부로 제약된 국면이 대체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2) 醫術과 孝道가 연계되기 시작

隋唐시기에 의사를 함부로 죽이는 정황이 대체로 바뀌어 의사의 지위가 어느 정도 상승되었지만 의학과 의사의 지위가 응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朝野士庶, 咸耻醫術之名. 多數子弟誦短文, 構小策, 以求出身之道. 醫治之術, 闕而弗論.”²⁴⁾하였다. 이 시기 의학에 집착하고 추구한 수많은 의가들이 의학을 중시한 언행은 당시는 물론 후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隋代 의가인 “許智藏, 世號名醫, 誠其弟子曰: ‘爲人子者, 嘗膳視藥, 不知方術, 豈謂孝乎?’ 由是世相傳授”²⁵⁾하게 되었다. 명의의 언행에 정책적 효력은 없었지만 고대 윤리도덕에 있어서 “孝”는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의술과 효도를 함께 연계시켜 자제를 가르치고 이로 말미암아 대대로 전수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확대되어 영향을 끼침으로써 의학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선전되었고, 후대에 의학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여론을 조성하게 되었다.

(3) 의사에 대한 律令이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律令은 주로 법률, 제도 및 황제의 詔令 등 정책성 요소를 가리킨다. 律은 곧 法이다. 軍律·弄律은 軍法·弄法이다. 制·法도 律이라 한다. 令은 發號, 命令이다. 율령도 바로 법령을 뜻한다.

20)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553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11*592.
21)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2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111.
22) 王溥 撰. 唐會要 卷5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670.
23)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2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110.

24) 孫思邈. 孫真人千金方 序.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p. 1.
25) 李昉 等奉勅撰. 太平御覽 卷723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899*448.

율령은 역대로 답습되고 인용되어 繼承성을 갖추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 따라 증감, 첨삭하기 때문에 時代性도 갖추고 있다. 중세기 중엽에 법률은 이미 전문적인 학문이 되어 律學이라 불렸다. 唐代에 國子監에 율학을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도 책으로 된 律書가 있었는데 『隋律』, 『唐律』 등이 있다. 전문적인 律書 이외에 황제들은 수시로 詔수를 반포하였는데, 이러한 조령은 법률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조령과 원래 정한 법률에 차이가 있으면 황제의 조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황제의 조령은 사실상 정책이며 따라서 이런 의의에서 봉건사회에 있어서 법률과 조령은 모두 정책이다.

수당오대시기에 律學이 발전함에 따라 의정 관리에서도 제도화, 법률화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의사의 도덕, 선임, 심사, 상벌 등에 관한 법률, 제도가 계속 만들어졌고, 의사의 사회적인 직책이 대체적으로 명확해지게 되었으며, 환자와의 관계도 바로잡혔다. 의사는 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계층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또한 일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의 다른 계층 사람들과 접촉하고 자신의 직책을 이행함으로써,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적으로 안정되었다. 이 시기 의사에 관한 율령은 주로 아래 3가지 방면이다.

① 의사의 도덕에 관한 율령

隋唐 이전에는 체계적인 법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없었다.隋唐시기에 이러한 방면의 법률 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唐律』에 “諸醫違法方詐療病，而取財物者，以盜論”²⁶⁾한다고 규정하였다. 『唐律疏義』에서 “諸醫違背本方，詐療疾病，率情增損，以取財物者，計贓以盜論。監監之與凡人，各依本法”²⁷⁾한다고 하였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속이는 것을 겨냥하여 정한 법률이다.

官役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의사가 명을 받아 검사 보고가 부실하거나 청탁을 받고 상해를 입혀 불구로 만

드는 것에 모두 법률적 책임을 지게 하여 죄를 판가름하였다. 예를 들어 “諸有詐病及死傷，受使檢驗不實者，各依所欺，減一等。若實病死及傷，不以實驗者，以故入人罪論”²⁸⁾하였다. 또한 “諸詐疾病，有所避者，杖一百。若故自傷殘者，待一年半(有避，無避等，雖不足爲殘疾，而臨時避事者皆是)，其受顧請，爲人傷殘者，與同罪，以故致死者，減鬪殺罪一等”²⁹⁾하였다. 상술한 법률은 의사의 진료비와 관을 위해 병을 진찰하는 것 모두 병세에 근거해야지 속이거나 범죄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였다.

② 의사의 選任 심사

唐·高祖 武德 7년(624년)에 규정한 고시 및 선임은 國子監 제도를 완전히 모방하여 과거를 시행하였다. 당대의 과거는 生徒, 貢舉, 制舉 3가지 방법으로 나뉘었다.

① 生徒 : 太醫署와 지방 의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太常의 고시를 거쳐 합격자에게 상응하는 관직을 수여한다.

② 貢舉 :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먼저 州縣에서 행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京師에 가서 太常寺 고시에 합격하면 채용한다. “乾元元年(758년)二月五日制，自今以後，有以醫術入仕者，同明經例處分。三年(760년)正月十日，右金吾長史王淑奏。醫術請同明法選人。自今以後，各試醫經方術策十道，本草二道，脈經二道，素問十道，張仲景傷寒論二道，諸雜經方義二道，通七以上留，以下放”³⁰⁾ 하였다. 貞元 12년(796년)에 이전에 설치된 醫博士 가운데 개인의 의술이 정통하지 못한 것을 감정하였는데, “三月十五日勅……自今以後，諸州應闕醫博士。宜令長史各自訪求選試，取藝業優長，堪效用者，具以名聞，已出身入式，吏部更不準選集”³¹⁾ 하였다.

28)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2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14.
 29)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1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231.
 30) 王溥 撰. 唐會要 卷8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255.
 31) 王溥 撰. 唐會要 卷8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256.

26)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2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14.
 27)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2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14.

㉔ 制學 : 이상의 방법 이외에 의술이 특별히 뛰어난 자가 있으면 제왕 스스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制學라 한다. 당대 孫思邈은 의술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었으며 老莊과 백가에 정통하였고, 아울러 불교도 능통하였다. 隋·文帝, 唐·太宗, 唐·高宗 때에 여러 차례 초빙하여 관직을 하사하였지만 그는 늙음과 병을 빙자하여 고사하였다. 太宗은 真人인 孫思邈을 칭송하길 “鑿開徑路, 名魁大醫. 羽翼三聖, 調和四時, 降龍伏虎, 拯衰救危, 巍巍堂堂, 百代大師”³²⁾라 하였다. 高宗 顯慶 4년(659년)에 그를 “丞務郎, 直尙藥局”³³⁾에 제수하였다.

의사를 선발하는 고시제도 이외에 의사 채용에 대한 시험 규정이 있었다. 시험의 기본적인 표준은 치료 효과에 두고 있었다. 당대 시험 과목의 규칙에 “四善”과 “二十七最”가 있었는데, 第23最是 “占候醫卜, 效驗居多, 爲方術之最”³⁴⁾이었다. 임상의 치료효과가 중요한 표준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제도와 규정 이외에 황제가 불시에 선발한 조치도 있었다. 玄宗 때 박학다재하고 도술과 의학에 능한 사람을 천거하라는 조칙을 반포하였는데 “博學多才道術醫藥學人等, 先令所司表薦, 兼自聞達. 勅限以滿, 須加考試. …… 道術醫學學人限閏三月內集. …… 舉取藝業優長, 試鍊有效者, 宜令所繇, 依節限處分”³⁵⁾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임상 치료효과를 기준으로 의학 인재를 선발할 것을 강조한 조치이다. 이 밖에 翰林醫官의 정원과 봉록에 대해 끊임없이 규정하였다. 德宗 때에 의관과 藥童을 선발하고 정지시키는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翰林醫官及藥童, 自今以後, 從考滿, 并不得于所司選, 其見選人亦宜停”³⁶⁾이라 하였다. 그리고 翰林醫官에 가하는 요금을 규정하여

“其見任醫術官, 應非翰林供奉, 不在加料錢限”³⁷⁾이라 하였다. 이러한 보충된 규정은 의관의 임용과 봉록제도 등을 점차적으로 완비시켰고, 후세에 비교적 완비된 의사 관리체제 형성에 기초를 닦았다.

㉕ 의사에 관한 상벌 율령

당대에 의사의 상벌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제왕, 태자, 황후 등의 병을 잘 치료하였거나 좋은 약을 헌납한 의사는 돈과 선물을 받거나 관직을 수여 받았다. “貞元二年九月, 山人 鄧思齊獻威靈仙草, 出商州, 能愈衆疾, 上于禁中試用, 有效, 令編附本草, 授思齊太醫丞”³⁸⁾하였다. 당대에 의사의 징벌에 관하여 몇몇 법률규정은 볼 수 있다.

㉖ 약의 조제에 잘못을 범한 의사는 絞罪하고 揀擇이 정확하지 못하면 徒刑에 처한다.

『唐律』의 규정 : “合和御藥誤不如本方及封題者, 醫絞”³⁹⁾한다고 하였다. 本方과 같지 않다는 것은 약의 양에 차이가 있거나 조합 방법이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 약을 조제 한 후 약물의 성질을 약봉지 위에 적는다. 복용하는 날짜 등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한 “料理揀擇不精者, 徒一年. 未進者各減一等, 監當官司, 各減醫一等”⁴⁰⁾할 것을 규정하였다. 料理는 약재의 절단, 찢고 체질하고, 씻는 것과 같은 기술이고, 揀擇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고르는 것이다. 이러한 방면에 부당한 점이 있으면 徒一年에 처하고, 관리하는 관원은 의사에 비해 1등을 감하는 죄가 있다. 이는 御藥 조제에 대해 정한 법률이다.

㉗ 일반인의 약물 조제에 잘못을 범하면 徒刑에 처한다.

御藥 조제에 잘못을 범하면 죽음을 당하고 일반 백성의 약을 잘못 조제했을 경우에는 徒刑에 처하였

32) 劉於義 等監修. 陝西通志 卷90 文淵閣四庫全書·史部·地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556*319.

33) 唐·劉肅. 唐新語 卷10 文淵閣四庫全書·子部·小說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035*376.

34)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25.

35)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639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13*430.

36) 王溥 撰. 唐會要 卷8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256.

37) 王溥 撰. 唐會要 卷8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256.

38) 王溥 撰. 唐會要 卷8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255.

39)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36.

40)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36.

다. 『唐律』에서 “諸醫爲人合藥及題疏，鍼刺誤不如本方殺人者，徒二年半。其故不如方殺傷人者，以故殺傷論。雖不傷人 杖六十。即賣藥不如本方傷人者，亦如之”⁴¹⁾할 것을 규정하였다.

㉞ 약물로 해를 끼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독약을 매매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유배를 보낸다.

『唐律』에 “諸以毒藥人及賣者，絞⁴²⁾，即賣買未用者流二千里”⁴³⁾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賣買未用’이라는 것은 구매한 사람이 독살하려는 본래의 의도를 판매한 사람이 알았으나 (구매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판매자의 죄 역시 범죄 행위에 속하여 (판매한 자는) 流刑 2천리에 처하였다. 이 조항은 약물을 다루는 의사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법률조항은 황제라 하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칙령의 형식을 빌려 법률의 엄격성을 지켰다. 乾附 4년(877년) 정월 5일에 僖宗은 죄인의 죄를 2등씩 감하라 명하였는데, 그러나 “…… 持刃行劫，合造毒藥，不在此限”⁴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昭宗 天復 元年(910년)에 天復이라 연호를 바꾸는 칙령에서 “…… 合造毒藥謀殺殺人及持杖行劫者 …… 不在原免之限 ……”⁴⁵⁾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황제도 이미 제정된 법률의 보호와 강화를 위해 주의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법률도 상응하는 작용을 발휘하였다.

5) 보건위생 방면의 제도와 율령을 제정

수당오대 시기에 보건위생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특히 근 300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唐代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보건제도가 점차 확립되고 완비되

었다. 일반 백성들의 보건위생은 통치자와 큰 차이가 있었지만 전대와 비교하면 개선된 측면이 있었다.

먼저 이 시기에는 황제의 단기 휴양과 功臣의 去官養病은 불문율로 되어있었다. 貞觀 20년(646년) 3월 太宗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돌아온 후 황태자가 政務를 결정하라 명하고 “所有機務可令決斷，百辟卿士咸宜受其節度，朕當親調五藥，暫屏萬機三兩月間且自怡攝”⁴⁶⁾할 것이라고 조칙을 내렸다. 太宗에서 비롯된 단기 調攝의 발단은 후대 황제들도 많이 모방하였다. 측천무후는 神龍 元年(705년) 정월에 “朕躬之幸，抑亦兆庶之福，斟方資藥餌，冀保痊和，機務既繁，有妨攝理 …… 宜令皇太子縣監國百官總己以聽，朕當養間高枕，庶獲延令，可大赦天下”⁴⁷⁾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황제 자신의 단기휴양 이외에 功臣이 관직을 떠나 요양할 수 있도록 율허하였으니 이것이 점차 唐代의 불문율로 변화하였다.

玄宗 때에 이전의 관례를 총결하여 “留侯多病，漢皇許其願養，呂蒙未瘳，吳王因而慘戚，此則古之義也。銀青光祿大夫，檢校黃門監兼上柱國漁陽郡開國伯盧懷慎，大才宏識，資忠履信，學窮墳典，文締邦國，朕之依賴，人實具瞻，頃者忘身徇公，積勞爲癘，竭誠抗表，固辭在職，方欲省其謀慮，專于導引，且憑鍼艾之術，副朕鹽梅之期，宜聽去官，許其養病。”⁴⁸⁾한다고 칙령을 내렸다. 玄宗이 율허한 功臣의 去官養病을 후세 황제들이 본받았다. 어떤 황제는 이 법으로 母后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憲宗 때에는 황태후의 寢疾權을 공포하여 정무를 보지 않았다. 그 칙령에는 “朕聞事親之禮，問安雖限于晨昏，爲子之心，就養在勤于左右，斯實虞帝明訓，周王遺風。朕率而行之，不敢有墜。伏以皇太后母臨萬國，子惠兆人，存神保和，養素全道，屬詔陽改侯，濡露感思，舊恙有加，常膳頓減。夙夜愧惕，不知所寧，今當專奉庭闈，躬嘗藥餌，脫冠解帶，且無暇于寢興。負戾臨軒，安

41)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卷2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19.

42)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독약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이를 산 사람은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이고 이를 판 사람은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43)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1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228.

44)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0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97.

45)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5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49.

46)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30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163.

47)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30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164.

48)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57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405.

能親于聽斷。起今日三日以後，權不聽政，故茲宣示，宜體朕懷”⁴⁹⁾라 하였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당대 황제가 공신 혹은 황실 친척의 去官養病을 비준한 사례에는 정치적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去官養病 혹은 權不聽政의 조치는 당시 통치자의 건강관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밖에 唐代 황제들은 자신의 보건과 공신들의 去官養病 뿐만 아니라 관원의 의료 보건도 중시하였다. 이들은 항상 太醫를 과견하여 대신 등 관원의 병을 치료하고 약을 보내었는데 이것은 거의 정례화 되었다. 또한 총애하는 대신에게 향료나 面脂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당대에 황제를 비롯하여 통치자들이 보건 위생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은 음식위생 방면으로 황제의 御膳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따라서 御膳을 둘러싼 제조, 食禁, 品嘗 등의 문제에 일련의 율령이 생겼다.

첫째. “諸選御膳誤犯食禁者，主食絞。若移惡之物在食飲中，徒二年。揀擇不精及進御不時減二等，不品嘗者杖一百”⁵⁰⁾하였다. 이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의 食禁은 주로 두 종류 이상의 식품이 섞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오이는 땅콩과 함께 쓸 수 없다”⁵¹⁾는 등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것들은 먹어서 탈이 나거나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금기를 범하면 요리사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식품은 청결해야 하고 揀擇이 정밀해야만 한다. ‘進御不時’는 규정된 시간에 따라 음식을 올리지 않는 것이고, 이밖에 “봄에는 음식이 따뜻해야 하고 여름에는 국이 뜨거워야 한다.”는 규정이다. “不品嘗”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맛을 판별하지 않아 음식 맛이 좋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맛을 보지 않아 음식의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諸監當官事及主食之人，誤將雜藥至御膳所者，絞”⁵²⁾라 하였다. 이 규정은 御膳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에 담당하는 관리가 감독하였음을 말한다. 그 본인이나 主食이 약을 가지고 御膳을 만드는 곳에 가면 곧 교수형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御膳을 제조하는 곳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여 약간만 신중하지 못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규정한 제왕의 어선 이외에 外膳(즉 百官의 膳食)에도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 “諸外膳犯食禁者，供膳杖七十。若移惡之物在食飲中及揀擇不淨者，笞五十，誤者各減二等”⁵³⁾하였다. 外膳에서 범한 것은 御膳과 같지만 그 처벌이 어선에 비해 훨씬 가벼움을 알 수 있다.

이밖에 唐代는 절인 육류의 중독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脯肉有毒曾經病人，有餘者速焚之，違者杖九十。若故與人食，并出賣令人病者，徒一年。以故致死者絞。即人自食致死者，從過失殺人法(盜而食者不坐)”⁵⁴⁾이라 하였다. 脯肉은 소금에 절인 것으로 당시에 절인 육류의 독을 방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다.

혼인 방면에 당대에 약간의 율령을 제정하였다. “規定同姓爲婚者各徒三年，總麻以上以奸論”⁵⁵⁾하였다. 同姓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周代에 이미 중시하였지만 법률의 형식으로 금지시키고 위법하면 형에 처한 것은 唐代에 처음 시작되었다. 總麻는 상하 친속 관계를 가리킨다. 상하 친족이 통혼하는 것은 奸으로 보았다. 이밖에 妻가 중한 질병이 있으면 버릴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諸妻無七出及義絕之事而出之者徒一年半，雖犯七出有三不去而出之者杖一百追還合，若犯惡疾及奸者不用此律”⁵⁶⁾고 하였다.

‘七出’은 규정에 따르면 자식이 없는 것, 음란한 것, 시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 구설수, 도둑질, 투기, 일곱째가 惡疾이다. 妻에게 惡疾이 있으면 쫓아낼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惡

52)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38.

53)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36.

54)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1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p. 672*229.

55)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79.

56)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83.

49)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76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574.

50)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36.

51) 唐志炯. 唐宋醫事律令. 醫學史與保健組織. 1958. 4호.

疾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그치는 평생 동안 수절한다. 이때에 남녀가 불평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보건 방면의 율령에서 唐代에는 사람의 귀와 코에 물건을 넣어진 안 된다고 하였다. “諸以物置人耳鼻及孔竅中有所妨者杖八十，其故屏去人服用飲食之物，以故主傷者，各以鬪殺傷論”⁵⁷⁾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狂犬을 도살하게 규정하였는데, “如狂犬不殺者，笞四十”⁵⁸⁾하였다. 이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광견병의 예방을 위한 율령이다.

이상의 율령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御膳의 제조 등과 같이 제왕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의 식품위생 수준(절인 고기에 관한 율령과 같은 것)을 향상시키고 근친혼을 금지하여 사람의 소질을 제고시켰고, 광견병을 예방하는 등 다방면에서 진보적인 의의가 있다.

6) 傷害의 輕重에 따른 율령

민사상의 분류는 폭행이나 구타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이다. 唐代에는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백성의 보건을 강화시키기 위해 구타로 인한 상해에 대해 율령이 제정하였다. 『唐律』에 “諸鬪毆人者笞四十(謂以手足擊者)，傷及以他物毆人者杖六十(見血爲傷。非手足者其餘皆爲他物，即兵不用刀亦是)，傷及撥髮方寸以上杖八十，若血從耳目出及內損吐血者各加二等”⁵⁹⁾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兵不用刀’은 병기를 사용하였으나 칼을 쓰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撥髮方寸’은 구타로 머리털이 뽑힌 면적이 사방 일촌 이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諸鬪毆人折齒毀缺耳鼻眇一目及折手足指(眇爲虧損其明而猶見物)，若破骨及湯火傷人者徒一年，折二齒二指以上及髡髮者徒一年半”⁶⁰⁾이라 규정하였다.

‘眇一目’은 안구에 손상을 입었으나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髡髮者’는 머리카락이 잘려 상투를 틀 수 없는 것이다. 또한 “諸鬪以兵刃斫射人不着者杖一百(兵刃謂弓箭稍矛矛贊之屬，即毆罪重者從毆法)，若刃傷(刃爲金鐵，無大小之限，堪以殺人者)及切人肋，眇其兩目，墮人胎徒二年(墮胎者謂牽內子死乃坐，若牽外死者從本毆傷論)”⁶¹⁾한다고 규정하였다. 牽內牽外는 保辜의 기한을 가리킨다.

『唐律』에는 각종 상해에 대해 각기 다른 保辜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⁶²⁾. 낙태한 자는 30일로 30일 이내를 牽內로 삼고 아이가 죽으면 낙태하게 한 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태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낙태의 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30일이 넘으면 牽外로 아이가 죽어도 낙태로써 논죄하지 않았다.

또한 『唐律』에는 “諸鬪毆折跌人肢體及瞎其一目者徒三年(折肢者折骨，跌體者骨差跌失其常處)，牽內平復作各減二等(餘條折跌平復準此)，即損二事以上及因舊患至篤疾，若斷舌及毀敗人陰陽者流三千里”⁶³⁾한다고 규정하였다. “二事”는 두 곳의 상해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한쪽 눈이 훼손되고 아울러 한쪽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舊患至篤疾”은 본래 한쪽 눈이 손상되어 있었는데 또한 다른 눈마저 훼손되어 篤疾이 된 것을 말한다.

수족으로 상해를 입히면 保辜 기한이 10일이고 기타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면 20일이고, 칼과 화상으로 상해를 입히면 30일이고, 지체나 골을 부러뜨린 것은 50일이다. 기한 내에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에 의거하였고, 기한 밖이나 기한 안에 죽었다 할지라도 다른 까닭으로 죽으면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논죄하였다.

이상의 규정으로 보아 당대는 상해의 경중을 기준

57)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1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195.
58)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1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14.
59)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257.
60)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258.
61)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258.
62)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증을 해주고, 만일 기한 내에 사망하면 가해자의 죄를 무겁게 하고, 기한 내에 죽지 않았을 때는 죄를 가볍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3)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2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259.

으로 형량을 결정하였고 상해의 결과(致死)에 대하여 기한 등을 규정한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그러나頭髮이 뽑혀 훼손된 것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이 원인은 唐代에 禮敎를 중시한 풍속 때문으로 두발은 사람 얼굴의 일부분으로 보았다. 이러한 풍속과 예교를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두발을 손상하였을 때 형량이 비교적 무거웠다.

7) 기술자, 노비, 囚人 등의 의약 관리에 대한 율령 唐代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여 정치, 법률 등의 문화 수준을 제고시켰다. 하층민과 죄수에 대한 의약 보건위생의 면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법률제도가 제정되었다. 匠人, 防人 등의 질병 치료에 대해 『唐律』에서 “諸工匠在役及防人在防, 若官戶奴婢疾病, 主司不爲請給醫藥救療者, 笞四十, 以故致死者, 徒一年…… 諸從徵及從行公使于所在身死, 依令應送還本鄉, 違而不送者杖一百, 若傷病而醫食有闕者杖六十, 因而致死者徒一年”⁶⁴⁾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두 율령은 하층민의 의약을 보장한 율령이다.

당대에는 하층민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囚人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囚人이 衣食, 醫藥 방면에 대하여 『唐律』에는 “諸囚應請給衣食醫藥而不請給, 及應聽家人入視而不聽, 應脫去枷樞而不脫者杖六十, 以故致死者徒一年, 卽減竊囚食笞五十, 以故致死者絞”⁶⁵⁾라 규정하였다. 이밖에 죄인이 병들어 낫지 않았을 경우 고문할 수 없도록 하였다. “卽有疾病不待差而拷者, 亦杖一百……”⁶⁶⁾하였다. 병이 없는 囚人일지라도 부위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고문할 수 없도록 하였다.

貞觀 4년(650년)에 太宗이 “戊寅制決罪人不得鞭背, 以明堂孔穴鍼灸之所”⁶⁷⁾하였다. 이후 貞觀 11년에

는 또한 囚人에 대해 “夏置漿飲, 月一沐浴, 疾病給醫藥……”⁶⁸⁾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囚人의 보건위생을 중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이외에 당대에는 범죄에 대한 남녀의 구별을 주의하였다. 『唐律』에는 “諸婦人犯死罪孕, 待決者, 聽產後一百日乃行刑, 若未產而決者, 徒二年, 產訖限未滿而決者徒一年, 失者各減二等. ……”⁶⁹⁾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諸婦人懷孕犯罪應拷決及杖笞, 若未產而拷決, 杖一百, 傷重者依前人不合捶拷法, 產後未滿百日而決者減一等, 失者各減二等”⁷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당대 통치자가 부녀자와 어린이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당대에 囚人의 의약과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기구는 없었지만 官兼官을 두었다. 刑部에 郎 1인 있고 員外郎 1인을 있었는데, 그 직책은 “掌配役隸, 簿錄囚, 以給衣糧藥療……”⁷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獄丞이다.

五代 시기에도 죄수의 의약을 중시하였다. 後唐·明宗은 병든 囚人을 구휼하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諸道州府各置病囚院. 仍委隨處長吏專切經心, 或有病囚, 當卽差人診候療理. 俟據所犯輕重決斷. 如敢因違, 致本囚負屈身死, 本官吏并加嚴斷, 兼每月自夏初至八月末已來, 每五日一次, 差人洗刷枷樞”⁷²⁾으로 되어 있다.

後晉·高祖 天福 2년(973년)에도 수인을 구휼하는 칙령을 반포하였는데, “方枉狴牢, 又榮疾診, 在典型之自別, 顧醫藥以何妨, 實可施行, 足彰仁憫, 宜下刑部大理寺, 御史臺及三京諸道州府, 或明系囚染患者, 并令逐處醫博士及軍醫看候. 于公廩錢內量支藥價, 或事輕者仍許家人看候, 所有罪犯合據杖責, 仍候痊損日科

64)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2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20.
65)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2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60.
66)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2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58.
67)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3 太宗紀第3下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8*66.

68) 馬端臨 著. 文獻通考 卷16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13*679.
69)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3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73.
70) 李林甫等 改修. 唐律疏義 卷3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72*373.
71)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35.
72) 王溥 撰. 五代會要 卷1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532.

決”⁷³⁾하였다.

後周·太祖 廣順 3년(953년)에는 “諸道州府, 囚系犯人宜急速斷遣, 仍令獄吏酒掃, 常令虛歇, 滌洗枷械, 毋令蚤虱. 供給水漿, 毋令飢渴. 如有疾患, 令其家人看承. 若囚人無親屬, 官差醫工診候, 勿致病死”⁷⁴⁾하라고 칙령을 내렸다. 後周·顯德 2년(955년) 4월에 “勅應諸道見禁罪人, 無家人供備吃食者, 每人逐日散官米二升. 不得聽任獄子節減削罪人口食”⁷⁵⁾하게 하였다.

囚인이 생존 시에는 음식과 의약을 가로채거나 줄일 수 없었고, 만약 수인이 죽으면 친족이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 치를 수 있게 허락하였다. 後晉시기 高祖가 죄인의 장례를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王業肇興, 德陰屢降, 念慈既往, 屬我維新, 宜宏掩骼之仁, 以廣濁幽之德. 其太社內應收掌唐朝罪人首級, 并許骨肉或親舊寮屬收葬. 其喪葬投注, 聊備飾終, 不得過制, 仍付所司”⁷⁶⁾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란이 빈번한 五代 시기에도 정부가 囚인의 음식과 의약위생, 매장 등의 방면에 대해 일련의 규정을 두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의료 대상에 관리와 백성, 囚인에 이르기까지 신분적 제한을 두지 않았던 사상은 일맥상통하여 정치가 안정되었던 唐朝나 전란이 빈번했던 五代시기나 모두 같았다.

8) 역병에 대한 정책

隋대에 강남에 瘴癘가 창궐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는데 “自嶺以南二十餘郡, 大率土地下濕, 皆多瘴癘, 人尤夭折”⁷⁷⁾하였다. 수대 통치자는 영토 확장에만 골몰하고 지역에 유행하는 병을 억제 예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 위험성과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과 군대의 방역시설과 조치가 상당히 빈약하였다. 거의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대는 두 차례의 큰 전쟁에서 역질의 유행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첫 번째는 文帝 開皇 18년(598년)에 “世積與漢王并爲行軍元帥, 水陸三十萬伐高麗, 至柳城遇疾疫而還”⁷⁸⁾하였고, “九月己丑, 漢王諒師遇疾疫而旋, 死者十八九.”⁷⁹⁾하였다. 漢王 諒이 “率衆至遼水”⁸⁰⁾하여 高句麗에 가까이 접근하였지만 역병으로 스스로 궤멸하였다. 煬帝가 즉위한 후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大業 7년(611년)에 대군을 이끌고 平壤으로 진격하였다. “是歲, 山東, 河南大水 …… 重以遼東覆敗, 死者數十萬, 因屬疫疾, 山東尤甚”⁸¹⁾하였다. 실패한 원인은 첫째가 홍수이며 둘째는 疫疾이었다. 隋의 통치자들은 군대에 대한 방역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지방 백성의 방역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당대에는 전국적 혹은 지역적인 역병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新唐書·五行志』, 『舊唐書』, 『全唐文』, 『文苑英華』 등의 기재에 의하면 貞觀 10년(636년)에서 大順 2년(891년)까지 255년 동안 비교적 큰 역병이 21차례나 발생했다. 더욱이 太宗 貞觀연간에는 더욱 심하였다. 貞觀 10년에서 22년까지 12년 동안 역병이 여섯 차례나 발생하였고 그 중에 貞觀 15년에서 18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한차례씩 발생했다. 이러한 빈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唐대에 역병이 발생한 상황을 아래 표 1과 같이 나열하였다⁸²⁾.

73)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42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2*680.
7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50.
75) 王溥 撰. 五代會要 卷1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534.
76)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42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2*680.
77)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31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575

78)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4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716
79) 魏徵 等奉勅撰. 隋書·高祖紀第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41.
80)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4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762.
81)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4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457.
82) 표 41에서 *는 舊唐書를 참고, △는 文苑英華의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新唐書·五行誌에 근거하였다.

諡號 혹은 廟號	중국 紀年	서기	유행 상황
太宗(世民)	貞觀10	636	關內 河東에 大疫 발생.
	貞觀15	641	3월, 澤州에 疫病 발생.
	貞觀16	642	여름, 谷·涇·徐·戴·虢 5州에 疫病 발생.
	貞觀17	643	여름, 潭·濠·廬 3州에 疫病 발생.
	貞觀18 貞觀22	644 648	廬·濠·巴·善·柳 5州에서 疫病 발생. 卿州에 大疫이 발생.
高宗(治)	永徽6	655	3월, 楚州에 大疫 발생.
	永淳1	682	겨울, 大疫이 발생하여 長安과 洛陽에 죽은 사람들이 거리에 널려 있었다.
則天 皇帝	垂拱3	687	봄, 京師에서 山東까지 疫病이 돌아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中宗(顯)	景龍1	707	여름, 京師에서 山東, 河北까지 疫病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
代宗 (豫)	寶應1	762	江東에 大疫이 돌아 죽은 자가 과반을 넘었다.
	廣德1	763	江東에서 大疫으로 죽은 사람이 반을 넘었다.
德宗(適)	貞元5	789	여름, 淮南·浙江 東西·福建 등에 가뭄이 들어 우물과 샘이 마르고 疫病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
	貞元6	790	여름, 淮南·浙西·福建에 疫病이 발생.
憲宗(純)	元和1	806	여름, 浙東에 大疫으로 죽은 자가 태반이었다.
	大和6	832	봄, 劍南에서 浙西까지 大疫이 발생
文宗(昂)	開成5	840	여름, 福建·臺·明 4州에 疫病 발생.
	大中9	855	江淮의 여러 道에 …… 疫疾이 발생 …… △
宣宗(忱)	咸通10	869	宣歙·兩浙에 疫病이 발생.
懿宗(准)	廣明1	880	늦은 봄, 도적들이 信州에서 疫癘에 걸려 도당들이 많이 죽었다. *
僖宗(晔)	大順2	891	봄, 淮南에 疫病이 돌아 죽은 자가 열에 3, 4명에 이르렀다.

표 1 당대에 疫病이 발생한 통계표

당대 각 왕조에서 疫病의 만연한 것에 대한 대책을 정도가 다르게 채택하였다. 永淳 원년(682년)에 大疫이 발생하여 疫病으로 죽은 자에 대해 高宗은 “詔所在官司埋瘞”⁸³⁾하였다. 大和 6년(832년) 봄에 劍南에서 浙西까지 大疫이 발생하자 文宗이 疫疾을 구휼하는 조령을 반포하여 “ …… 雖飢疫凶荒, 國家代

有, 而陰陽禘診, 儆戒朕躬. 自諸道水旱害人, 疫疾相斷, 宵旰罪已, 興寢疚懷. 屢降詔書, 俾副勤恤. 以稟蠲賦, 救患賑貧, 亦謂至矣 …… 其諸道應災荒處疫之家, 有一門盡歿者, 官給凶具, 隨事瘞藏. 一家如有口累, 疫死一半者, 量事與本戶稅錢三分中減一分. 死一半已上者, 與減一半本戶稅. 其疫未定處, 并委長吏差官巡撫, 量給醫藥. 詢問救療之術, 各加拯濟. 事畢條疏奏來. 其有一家長大者皆死, 所餘孩稚, 十二至襁褓者, 不能自

83)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8*103.

活，必致夭傷。長吏勸其近親收養。仍官中給兩月糧，亦具數聞奏。江南諸道，既有凶荒，賦入上供，悉多蠲減。……其州府長吏，各奉詔條，勉加拯恤。……”⁸⁴⁾하게 하였다.

宣宗은 大中 9년(855년) 7월 30일에 역질 유행으로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는 참상에 대해 “……江淮數道因之以水旱，加之以疾疫，流亡轉徙，十室九空，……頻年災荒，無可徵納，宜特赦三年…….”⁸⁵⁾할 것을 고하였다. 高宗, 文宗, 宣宗 등이 채택한 이러한 시책은 어느 정도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文宗이 취한 조치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당대 전반으로 말하자면 큰 역병이 20여 차례 발생한 것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시책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다.

五代시기에도 역병이 때때로 발생하였고 여기에 대해 통치자들은 대책을 강구하였다.

乾化 2년(912년)에 태조 朱溫이 “……凡有疫之處，委長吏拈尋醫方，于要路曉示。如有可無骨肉兼困窮不濟者，即仰長吏差醫給藥治療之”⁸⁶⁾하라고 조칙을 내렸다. 朱溫 개인적으로는 방역을 중시하여 詔書를 공포하였으나 전란으로 인해 국가가 역병을 예방하고 통제할 체계가 없어 실천에 옮길 수 없었다. 군대에서 발생한 역병에 대해서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고 병사는 병을 숨기고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A. D. 907~912년에 “已而兵大疫，叔琮班師，令曰‘病不能行者焚之’，病者懼，皆言無恙”⁸⁷⁾하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군대는 매번 역병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後唐 清泰 3년(936년) 마지막 제왕인 李從珂는 和凝의 상소에 준하여 “天下諸屯駐兵士，望令太醫署合傷寒、時氣、痢疾等藥，量給付本軍主掌，以給患病士卒之家。百姓亦準醫疾。令和合藥物拯救貧民”⁸⁸⁾하게

하였다. 後唐 정부는 군사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병사의 가족 및 빈민에 대한 의료에도 관심을 가졌다. 太醫署와 각 州道 醫生은 관청의 의료 이외에 군대 내에 軍醫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後晉시기에는 後唐의 軍醫제도를 계승하였고 부대의 의약도 상당히 호진되었다. 後周 太祖(951-953년)시기에 王環이 장수가 되자 소속된 사병의 건강을 중시하여 “經常置鍼藥于庭右，戰罷，索傷者于帳前，親自治療，故甚得士心，所向皆捷”⁸⁹⁾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五代시대 後梁 태조 朱溫과 後唐말기 황제인 李從珂와 後周 대장 王環 등이 모두 疫疾에 대한 예방치료와 군대의약을 중시하였으며, 어느 정도 질병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五代는 動亂시대라 통치자는 정권을 탈취하거나 보호하는데 정신이 팔려, 역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軍醫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되었지만 숫자가 제한되었고, 의료기술이 보통이어서 군대에 의사와 약물이 부족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수당오대시기 각 왕조는 역병을 억제하는 방면의 조치에 충분한 힘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황제들이 전국적으로 노출된 유골을 매장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객관적으로 역병 발생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唐代 초기 高祖 武德 2년(619년)에 隋代 말기에 전쟁으로 수습하지 못한 유골을 매장할 것을 공포하였고, 太宗 때에는 전국에 유골을 매장하여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칙을 적어도 세 차례나 공포하였다. 玄宗 天寶 원년(742년) 3월에 “移風易俗，王化之大猷，掩骼埋胔，時令之通典。如聞江左百姓之間，或家遭疫疾因而致死，皆棄之中野，無復安葬，情理都闕。一至于斯，習以爲常，乃成其弊。自今以後，宜委郡縣長吏，嚴加誡約。俾其知禁，勿使更然。其先未葬者。即勒本家收葬，庶葉禮經，諸道有此同者，亦宜準此。”⁹⁰⁾

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607*561.

89) 曹仁虎 等奉勅撰. 續通典 卷9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41*47.

90)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801.

84)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103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3*820.

85) 李昉 等奉勅編. 文苑英華 卷436 文淵閣四庫全書·集部·總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337*109.

86) 薛居正 等奉勅撰. 舊五代史 卷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7*85.

87) 歐陽修 撰. 新五代史 卷4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9*271.

88) 王溥 撰. 五代會要 卷1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

하라고 조칙을 내렸다. 代宗은 寶應 원년(762년)에도 京城 내외의 해골을 매장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五代시대에 後晉, 後周정부도 유골의 매장을 중시하였다. 後晉 出帝 때에도 감옥에서 죽은 자를 매장하도록 하는 조칙을 적어도 세 차례 내렸다. 後周·太祖 때에는 “令黃知筠往兗州收埋暴骨”⁹¹⁾하라고 하였다. 廣順 2년(952년)에 風翔 절도사 趙暉가 “王景崇叛亂時, 殺戮飢死骸骨除先有使臣埋瘞外, 令坊曲坑井, 聚十八年車瘞祭奠”⁹²⁾할 것을 상소하였다.

수당오대에 황제들이 해골을 매장하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낡은 풍속을 고치는 것이었다. 이런 동기가 생겨난 원인은 代宗의 말에 의하면 “朕爲人父母, 良深憫惻”⁹³⁾하기 때문이었다. 황제들이 채택한 이러한 조치가 방역을 위한 여부인지는 막론하고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돌림병을 방역하는데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

唐代 貞觀 연간에 역병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隋代 말기에 잦은 전쟁이 질병 유행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太宗이 유골을 매장하라는 조치는 후대 역병 예방에 기초가 되었다. 貞觀 이후 역병 발생 빈도가 貞觀시기 및 秦漢, 위진남북조시기 보다 확실히 감소되었으며 특히 玄宗 天寶 원년에는 전국적으로 유골을 매장하라는 詔令을 단행한 후 20여 년 간 큰 역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골 매장에 대한 조치가 역병 발생과 예방에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9) 사회적 구휼정책 제정

수당오대시기에는 의학발전과 직접 관계되는 정책법령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의학과 관계가 있는 사회구휼 정책이 초보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봉건 사회의 醫政을 완비시키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 방면은 唐代 각 정부가 주로 작용

하였다.

唐이 건립되고 武德 2년(619) 윤2월에 高祖는 “…… 令皇太子建成巡京城側近諸縣, 秦王巡京城以東, 左仆射裴寂巡京城以西. 詔彼閭閻見耆老, 親省風俗, 廉察吏民, 乏絕人量加振恤. 如有冤滯并爲申理. 高年疾病就致束帛”⁹⁴⁾하라고 하였다. 高祖의 이러한 조치는 당대 황제의 구휼활동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玄宗 때에는 늙고 병든 군사를 돌려보내도록 조치를 내려 “諸軍行人, 皆遠離鄉貫, 抃彼疆場幼卽逾年. 言念艱勞, 豈忘憂恤. 有疾病老弱不堪鬪戰者, 委節度揀擇放還”⁹⁵⁾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약하고 병든 병사를 구휼하여 민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전투력을 증강시켰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병사에 대한 구휼에도 일정한 규정이 있었다. 天寶 3년(744년) 10월에 玄宗은 또한 병든 三衛驍騎에게 식량을 나누어주도록 하여 “…… 內外廂三衛驍騎等, 如聞因當上染患者, 番滿之後, 既不勝皆致還鄉, 又不容在職掌將息, 進退無據, 保所依投, 溝壑是憂, 豈謀朝夕. 永言及此, 深軫于懷. 自今以後, 如有此色, 宜移就三衛廚給食料將養. 各委左右金吾將軍存意檢校, 所經藥物仍與太常計會量事供似, 并差醫人救療. 其諸門及街鋪職掌人等, 各移就本衛將養, 所須食料, 各委將軍以當諸色迴殘官物等, 且量事支給. 其醫藥宜准內外廂, 例自餘色. 當番人等有疾者, 并准此處分. 其有身死者, 各委所由隨事埋瘞, 當日牒報本貫, 令家人親族運致還鄉”⁹⁶⁾하라고 하였다. 군대에서 다치고 죽는 병사의 구휼에 대해서 당 정부에서도 일련의 규정이 있었다.

至德 2년(757)에 肅宗은 “收葬陣亡將士及慰問其家口勅(曰)…… 戰士陣亡多委溝壑, 已令收瘞, 猶慮或遺撫存哀歿. 朕之所切, 宜令節度使與郡縣長官計會悉收骸骨埋葬致祭. 仍勘責姓名, 續行奏聞, 將褒贈其官爵, 憂恤其妻子. 仍令本道使者郡縣勿差科其家……”⁹⁷⁾

91)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135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4*436.
92)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412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9*219.
93)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802.

94)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15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806.
95)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135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04*431.
96)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800.
97)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802.

하라고 공포하였다.

大歷 9년(744년)에 代宗이 대대적인 사면을 할 때에도 조령을 내리길 “在軍將士有刀箭所傷，久嬰沈疾者，戮力疆場身當鋒刃。各委所由量給藥物，厚加優賞。其陣亡將士，亦仰本使隨事優恤妻子，各申錫賚，其百姓鰥寡孤獨不能存濟者，因窮無主誠可哀傷，所在府州縣長官，每年以諸色官物量加贍恤 ……”⁹⁸⁾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당 정부는 군대병사에 대한 구휼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구휼도 중시하였다.

開元 25년(737년)에 불구자를 殘疾, 廢疾, 篤疾 三等으로 나누었는데, “諸一目盲, 兩耳聾, 手無二指, 足無三指, 手足無大指, 禿瘡無髮, 久漏下重, 大癩重, 如此之類, 皆爲殘疾. 痴癡, 侏儒, 腰脊折, 一肢廢, 如此之類, 皆爲廢疾. 惡疾, 癲狂, 兩肢廢, 兩目盲, 如此之類, 皆爲篤疾.”⁹⁹⁾로 규정하였다. 같은 해 두 조령을 규정하여 하나는 “諸年八十及篤疾, 給侍一人. 九十, 二人. 百歲, 五人. 皆先盡子孫, 聽取近親, 皆先輕色. 無近親外取白丁者, 人取家內中男者并聽”¹⁰⁰⁾하게 하였다.

玄宗 開元시기에는 殘疾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등급을 나누어 대우함으로써 의약 구휼정책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이러한 정책 이외도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연호를 개정하거나 황태자, 황제, 황후가 책립되거나 태자의 병이 낫는 등의 일이 있으면 조칙을 내려 구휼하였다. 上元 연호를 없애고 光宅, 載初으로 바뀌었을 때, 元和 7년 황태자가 책립될 때, 長慶 3년, 大和 8년 咸通 황제가 병이 나았을 때 등의 경우에 則天皇帝, 肅宗, 憲宗, 穆宗, 文宗, 懿宗 등은 모두 일련의 구휼하는 조령을 반포하였다. 구휼 대상도 비교적 광범하여 병약한 군사, 홀아비, 과부, 고아, 늙은이, 篤疾에 있는 백성이 해당되고 또한 僧尼도 구휼하였다. 어떤 황제는 심지어 구휼의 표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咸通 8년(867년)에 懿宗의 병세가 회복되자 백성과 僧尼를 구휼하도록 칙령을 내려 “ …… 天下百姓僧尼道士女冠等, 有年七十以上疾病微痼, 委頓床榻者, 宜各賜絹兩匹. 在軍旅行陣經敵傷害手足眼目不能營生, 亦各賜絹兩匹. 應州縣病坊貧兒多處賜米十石, 或有少處卽七石, 五石, 三石. 其病坊據元敕各有本利錢; 委所在刺史, 隸事, 參軍, 顯令糾勘兼差. 有道行僧人, 專勾當三年一替. 如遇風雪之時病者, 不能求函, 卽取本坊利錢市米爲粥, 均給飢乏. 如疾病可救, 卽與市藥理療, 其所用絹米等, 且以戶府屬省錢物交, 速具申奏, 俟知定數, 卽以藩鎮所進賀疾愈物支還所司. 此勅到, 仰所在州縣定寫錄勅于州縣門并坊市村閭要路. 其州縣所給恤絹米恐下吏之所隱欺, 仍委刺縣令設法頒布, 不得令不利本身, 所在給恤之後一分析, 聞奏俾令速濟疾, 稱朕意焉.”¹⁰¹⁾이라 하였다.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당대는 봉건사회가 융성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구휼하는 일련의 정책이 대체로 제정되었다. 특히 玄宗 때에는 장애인에 대한 구휼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唐代 뿐만 아니라 당대 이후 구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고 있다.

이상에서 隋唐五代시대 의학발전정책의 형성 및 그 내용을 분석하여 총결하였다. 이 시기 의학발전과 관련한 정책은 많지만 자료의 한계로 대체적으로 귀납시켰다. 초보적인 분석과 귀납을 통하여 검토하더라도 봉건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을 제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이다. 이 시기 의약정책은 의학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봉건사회의 의약정책 내용을 대체적으로 완성시켰고 兩宋의 의약정책의 제정 및 의학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다.

3. 의약기구와 제도의 완비

1) 醫政구조의 특징

隋唐시기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방면뿐만 아니

98)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85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648.

99) 仁井田陸 著. 唐令拾遺·戶令第9.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 p. 228.

100) 仁井田陸 著. 唐令拾遺·戶令第9.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 p. 231.

101)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0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100.

라 의약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가 의약발전의 규율에 되는 일련의 의약정책을 제정했고 이밖에 이러한 정책과 상응하는 기구,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의약정책이 관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의정조직의 구조에 대해 말하면 위진남북조 때에 대략 마련되었고 수당시대에는 이를 개조하고 완비시켰다. 이 시기의 의정구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太醫署·丞제도가 계속 계승되었지만 太醫署를 관리하는 데에 한정되었다.

둘째. 태의서의 구조는 인원규모가 매우 크고 의약행정과 의학교육을 겸한 기관이었다.

셋째. 尙藥局은 황제 및 황실 사람들의 의료 및 약품관리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기구의 규격 및 醫官의 관품과 녹봉이 상응하여 높아졌다.

넷째. 태자를 위해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藥藏局 기구가 확대되고 그 인원이 늘어났다.

다섯째. 지방의 의정이 발전하고 평민의 의료조직이 늘어났고 지방 의학교육이 대체적으로 규모를 갖추었다.

여섯째. 군대에 전담 의생이 증가하였고 지방 의생은 지방군대의 의료 업무를 겸하여 관리하였다. 2) 宮廷 의약기구와 기능

隋唐五代의 중앙의정기구, 궁정의약조직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대체적으로 구축된 기초 위에 새로운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두드러진 특징은 太醫署의 조직구조와 기능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아래에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태의서의 구조 및 기능

수당의 태의서는 北齊 때에 太常寺에 예속시킨 제도를 답습하였다. 구조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北齊의 태의서에는 주로 행정과 의료의 두 분야의 인원이 있었다. 그러나 수당 때에는 박사, 조교 등 敎學 인원을 크게 늘렸다.

尙藥局은 이 시기에 군왕 및 궁정 사람들의 의료 및 약품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궁정 의사는 여기에 귀속되어 관리되었고, 醫師·醫工 등 일부 소수의 의사만이 태의서에 예속되었다. 그들은 의학교육을 보조하였다. 따라서 수당 태의서의 구조, 기능을 인식함에 있어서 태의서의 행정과 교학 두 부분을 고려하고 인원의 직능과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① 행정관리

“太醫署：令二人(從七品下)”¹⁰²⁾, “掌醫療之法”¹⁰³⁾ 하는 태의서는 행정 장관이다. 丞(從八品下)은 두 번째 서열이다. 이 이외에 醫監(從八品下) 및 醫正(從九品下)은 令·丞을 도와 행정과 교학을 관리한다. 이밖에 醫正은 질병을 치료하고 학생들의 의료실습을 돕고 관리한다. 수당시대에 태의서 속에 行政醫官이 설치된 것은 대부분 같다. 『隋書』에는 품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에 언급한 것은 唐代의 품위이다. 행정의관의 수량은 시기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표 2와 같다.

	令	丞	醫監	醫正	합계	비고
文帝 시기	2	1(2)	-	-	3(4)	() 안의 숫자는 『唐六典』에 기록된 수이고 나머지는 『隋書』에 기재된 수이다.
煬帝 시기	2	1(2)	5	10	18(19)	
『唐六典』	2	2	4	8	16	
『新唐書』	2	3	4	8	17	

표 2 隋唐 太醫署의 行政人員表

102)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

② 醫藥敎學

의약교육은 魏晉시대에 발단이 보이기 시작한 이래로 南北朝시기에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 北魏의 太醫署에 太醫博士(從七品下)와 太醫助教(從九品中)가 설치된 것은 의학방면에 박사와 조교 설치의 시초가 되었다. 수당시기 태의서 안에 의약교육 인원의 규모는 매우 컸다. 또한 의학교육과 약학교육 두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 지었고 또한 의학의 특징과 수요에 따라 다른 계급의 인원을 배치했다.

㉠ 의학교육

隋代에는 醫博士 2명을 설치하였고 품위는 분명하지 않다. 唐代에는 1명으로 줄었고 “正八品上”¹⁰⁴⁾이

의 실천을 통하여 唐代에 이르러 醫, 鍼, 按摩, 呪禁 등 4科的 교학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과 모두 박사를 두어 그 과의 교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醫, 鍼科는 조교를 두어 교학을 돕고 의과에는 “典學”¹⁰⁸⁾을 설치하여 수업의 기록을 관장하였다. 4科에 모두 師·工을 설치하고 “凡醫師·醫工·醫正療人疾病, 以其全多少而書之以爲考課”¹⁰⁹⁾하였다. 그들 모두 의료실습 업무를 맡았다. 鍼, 按摩, 呪禁 등 과의 師·工과 醫科의 師·工의 직책은 비슷하다. 4과 의 학생은 일정한 비례가 있었다. 이상 인원의 숫자에 대한 기록은 각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직책	박사	조교	師	工	生	(典學)	합계	비고
隋朝	醫	2	2	-/120	-	-/120	-	4/244	인원이 다른 경우: 『隋書』/『唐六典』
	按摩	-	-	-/100	-	-/100	-	-/200	
	呪禁	2	-	-	-	-	-	2	
	합계	4	2/2	-/220	-	-/220	-	6/446	
唐朝	醫	1/2/1	1	20	100	40	10/-/-	172/163/162	인원이 다른 경우: 『唐六典』/『舊唐書』/『新唐書』
	鍼	1/	1/	10/	20/	20/	-	52	
	按摩	1	-	4	16/16/5/6	30/15/30	-	51/36/91	
	呪禁	1	-	2	8	10	-	21	
	합계	4/5/4	2	36	144/144/184	100/85/100	10/-/-	296/272/326	

표 3 隋唐 太醫署 의학교육의 교수와 학생 인원수

었다. 隋代에는 鍼灸敎學은 醫博士가 맡았다. 唐代에는 분리되어 “鍼博士一人(從八品上)”¹⁰⁵⁾을 두었다. 隋는 按摩師를 설치하였고 唐은 “按摩博士一人 …… 并從九品下”¹⁰⁶⁾를 두었다. 呪禁博士는 隋代에 2명을 두었고 품위는 분명하지 않다. 唐代에는 1명을 두었고 “從九品下”¹⁰⁷⁾이다. 이에 따르면 의학교육은 隋代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각과를 구성하는 師·生·員·工의 숫자가 다르고 職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과가 맡고 있는 직책 혹은 각 계통이 나타내는 기능에 어느 정도 차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醫科는 4科 가운데 조직의 구조가 제일 크고 의관의 직품도 다른 과보다 높다. 박사를 둔 것 이외에 “助教一人(從九品上)”¹¹⁰⁾을 두어 박사를 도왔다. 醫助敎의 직품은 안마·주금박사보다 높다. 師·工·生 등

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57.
103)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57.
104)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666.
105)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06)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07)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5 文淵閣四庫全書·史

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666.
108) 張九齡 撰. 唐六典 卷40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595*138.
109)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57.
110)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의 수량도 다른 과보다 많다. 따라서 의과교학은 모든 교육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였다. 학생들은 먼저 『本草』, 『甲乙經』, 『脈經』 등 기초과정을 학습한다. 그 다음 5개의 전문과로 나뉘어져 “一曰體療(內科), 二曰瘡腫(外科), 三曰少小(小兒科), 四曰耳目口齒, 五曰角法(혹은 灸法이라 한다)”¹¹¹⁾이다. 각 전문과는 전공의 성격과 사회적인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비례와 수업기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표 3에 나열된 40명의 의학생 합계는 내과학생이 의과 학생의 총수의 50%(즉 20명)을 차지하고 수업은 7년이다. 외과, 소아과는 각 15%(즉 각 6명)를 차지하고 수업은 모두 5년이다. 耳目口齒科는 10%(4명)을 차지하고 수업은 4년이다. 角法(灸法)科는 10%(4명)을 차지하고 수업은 3년이다. 의과가 제차 분과되면서 구조가 커지고 기능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돕는 醫師 20명과 醫工 100명을 두었다. 典學 10명을 보태면 의과에서 스승과 제자의 비례는 3.3 : 1로 이러한 비례는 唐代 의과교수 배분이 괄목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당대 정부의 의학교육을 중시하였고 또한 학생의 학습조건이 우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鍼科는 당대부터 의과에서 정식으로 독립되어 하나의 과로 성립되었고 전문 박사를 두었다. 또한 “助教一人, 鍼師十人, 并從九品下. 掌教鍼生以經脈孔穴”¹¹²⁾하고 九鍼補瀉法을 가르친다. 그 다음 浮, 沉, 滑, 澀 등의 脈象을 학습한다. 鍼生이 학습하는 과정에는 『素問』, 『黃帝鍼經』의 明堂脈訣·流注偃側圖·赤鳥神鍼 등의 經이 있다. 『唐六典』에는 당대의 鑱鍼, 圓鍼, 鍤鍼, 鋒鍼, 劍鍼, 豪鍼, 火鍼의 성질과 性狀 및 주치 질병이 기재되어 있다. 鍼科 조직의 규모는 醫科 다음이고 스승과 제자의 비례는 1.6 : 1이다.

按摩科는 손의 능력을 강조하고 이론교육과 실제 조작을 동등하게 중요한 지위에 두었다. 이 때문에 대우에 있어서 “按摩博士一人, 按摩師四人, 并從九品下.”¹¹³⁾하여 다른 科와는 다른 점이다. 이들은 “掌教

導引之法, 以除疾損傷. 折跌者正之”¹¹⁴⁾한다. 즉 안마와 正骨 두 가지 임무를 책임진다. 正骨의 기원이 按摩임을 알 수 있다. 안마과의 스승과 제자의 비례는 1.4 : 1이다¹¹⁵⁾.

당대에 불교와 도교가 성행하자 의학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呪禁을 한 科로 삼아 교학하였다. 『醫經正本書』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주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道禁으로 산에 은거하는 方術의 士(道敎)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禁呪로 釋氏(佛敎)에서 나온 것으로 5종의 禁法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存思, 둘째 禹步, 셋째 營月, 넷째 掌訣, 다섯째 手印이다. 『千金翼方』의 禁經 역시 咒禁術의 내용이다. 이 과의 인원수는 비교적 적고 스승과 제자의 비례는 1.1 : 1이다.

당대의 태의서는 교학의 이론과 실천의 연계에 주의를 기울여 각과에 실습을 지도하는 師·工을 두었다. 각과의 학생들은 매일 박사가 주최하는 시험을 한번 치러야했고, 매 계절마다 태의령·승이 직접 시험을 주관했고 연말에는 太常丞이 종합시험을 주관했다. 성적이 우수하고 의술이 현직 의관을 뛰어넘는 인재는 바로 관직을 부여받았다. 예로 9년 동안 성적이 좋지 못하면 퇴출된다. 이로써 수당시기 의학교육은 비교적 완비된 관리체도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⑥ 약학교육

隋代에 정규적인 의학교육을 설치함과 동시에 약학교육도 설치하였고 唐代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 『당육전(唐六典)』에 의거한 구성인원은 다음 표 4와 같다.

직책	府	史	主藥	藥童	藥園師	藥園生	掌固	합계
隋代	-	-	2	-	2	불분명	-	4
唐代	2	4	8	24	2	8	4	52

표 4 隋唐 약학교육 교수·학생 인원수

111)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12)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13)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14)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太醫署에서 府, 史, 主藥, 藥童, 掌固가 약물을 관리한다. 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史는 문서자료를 관리하고, 主藥은 약물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藥童은 主藥을 돕고, 掌固는 약창고를 주관한다.

태의서에서 약물을 공급받는 것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는 “京師以良田爲園, 庶人十六以上爲藥園生, 業成者爲師. 凡藥辨其所出, 擇其良者進焉”¹¹⁶⁾이라 하였다. 藥園에서 심은 약물은 대부분 신선하고 즙으로 사용하며 소량은 藥園生이 약물의 性狀, 栽培 등 기본적인 지식을 파악하는 학습견본 약품으로 소량 공급되었다. 둘째는 임상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품은 생산지에서 직접 채집하여 “凡課藥之州, 置采藥師一人”¹¹⁷⁾하였다. 운반해온 약물은 右藥藏庫에 저장했다. 京師에 설치된 藥園은 약학교육의 기지이며 三頃 정도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藥園師가 지식을 전수하였고, 또 실천과정에서 직접 藥園生을 지도한다. 약학교육을 담당하는 의관의 品位는 대체적으로 낮았는데, 府, 史 등의 직무는 문헌에 官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通典』에 약원사가 品外之官이라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관품도 그리 높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太醫署의 행정, 약학교육, 약학교육 방면에 따른 인원구성과 직책 및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문헌 기재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당시대 太醫署의 전반적인 구성 상황을 나타내면 다음 표 5와 같다.

문헌	隋代	唐代				
	隋書	唐六典		新唐書	舊唐書	
		(武德)	(貞觀)			
행정	18	19	16	16	17	16
의학	6	446	296	273	326	272
약학	4	4	52	52	52	52
총계	28	469	364	341	395	340

표 5 隋唐시기 太醫署 구성 인원

115) 이 비례는 舊唐書에 기재된 것 자료에 의함

116)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17)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표 5에 의하면 隋代 태의서 구성인원은 『수서』와 『당육전』에 기재된 숫자의 오차가 비교적 큰 것을 볼 수 있다. 당대 태의서 교학인원은 93.2%를 차지하고 있어 태의서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학인원이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 시기 태의서의 주요 책무는 학생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劉宋(443년) 때에 정부가 설립한 의학교육기관이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당대 태의서의 의학교육은 조직이 엄밀하고 분과가 세분화되어 있다. 수당시기 의학교육의 발전은 의약지식의 광범한 전파와 의약의 학술수준을 높이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이밖에 隋唐 태의서에 행정을 관리하는 인원의 숫자가 비교적 적어 『신당서』에 기재된 것에 의하면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敎學을 제외한 위생행정을 관리하는 직책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太醫署每歲常配合治傷寒·時氣·瘧·痢等病的藥物, 在疾病流行區發送給患者”¹¹⁸⁾하였다. 貞觀 10년(636년)에 “是歲關內河東疾病, 命醫賚藥療之.”¹¹⁹⁾하게 하였다. 따라서 수당 태의서는 정부의 위생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관하는 의학교육기관인 것이 가장 주된 특징이다.

(2) 尙藥局의 구조와 기능

① 상약국의 연혁

南朝·梁代에 처음으로 태의서에 상약국이 설치되었고 그 동기는 궁정의 약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약국의 책임자는 奉御이다. 관리의 편의를 위해 梁·陳 이래로 태의서의 태의가 겸직하였다. 北齊 때에 상약국을 태의서로부터 독립시켜 門下省에 귀속시켜 관리하였는데, 그 목적은 황제와 황족의 치료 용약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황제를 직접 모시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점차 늘어났고 직능도 단순한 약품관리에서 점차 변화하여 醫와 藥을 함께 관리하고 장관인 尙藥典御의 지위가 정5품으로 높아졌

11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60.

119)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太宗紀下第3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8*69.

다.

隋는 北齊의 제도를 답습하여 文帝시기(589~604년)에는 상약국이 여전히 문하성에 소속되었고 典御 2명 모두 정5품이었다. 煬帝시기(605~616년)에는 상약국이 殿內省에 귀속되고, 典御 또한 奉御로 개명되었다.

唐代 상약국은 殿中省에 소속되었고 藥尙奉御 2명을 정5품으로 두었다. 高宗 龍朔 2년(662년)에 상약국이 奉藥局으로 바뀌었다. 高宗 咸亨 원년(670년)에 본래의 명칭으로 복귀시켰다. 隋唐 300여 년 간 이 제도는 계속 답습되었다. 기구와 장관의 명칭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이 시기 상약국은 실제적으로 정부가 주관한 황실의원이었다.

② 상약국의 조직구조와 변화

수대 초기 文帝 때에 “尙藥局, 典御二人, 侍御醫·直長各四人, 醫師四十人”¹²⁰⁾이 있었다. 煬帝 때에 이르러 상약국은 殿內省에 예속되고 典御는 奉御로 개명되었으며, 상약국에 “司醫·醫佐員”¹²¹⁾을 증원시켜 “司醫三人”¹²²⁾을 두었다.

『唐六典』에 佐醫員 8명, 主藥 4명, 藥童 24명, 按摩師 120명을 두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唐書』과 『唐六典』을 참고하여 『隋書』에 기록된 숫자를 하한으로 생각하면, 煬帝시기에 상약국의 인원이 53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唐代 상약국은 殿中省에 소속되었고 그 인원구성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尙藥局奉御二人(正五品下), 直長四人(正七品上), 書吏四人, 侍御醫四人(從六品上), 主藥十二人, 藥童三十人, 司醫四人(正八品下), 醫佐八人(正八品下), 按摩師四人, 咒禁師四人, 合口脂匠四人, 掌固四人.”¹²³⁾을 두었다. 『新唐書』에는 書令史 2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의관의 숫자도 위에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唐六典』, 『新唐書』, 『舊唐書』를 서로 참고하여 舊唐書에 기재된 수를 중간의 숫자로 삼으면, 당대 상약국의 인원수는 적어도 84명 정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 醫官의 직품도 비교적 명확하다. 이것이 당대 상약국의 기본적인 구성이며 당대 초기의 규모이다.

玄宗 開元 이후 수요와 황제의 詔, 敕에 따라 상약국의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 開元 10년(722년) 현종은 5월 9일에 상약국 御藥庫에 “每月支監門二人守當”¹²⁴⁾하게 명하였다. 貞元 15년(799년) 德宗은 4월에 “殿中省尙藥局司醫宜更置一員, 醫佐加置兩員, 仍并留授翰林醫官, 所司不得注似. 十一月, 殿中省初置奉御尙醫四員, 每月各給料錢二十五貫文, 資品同詹事府丞”¹²⁵⁾하라고 칙령을 내렸다. 수당시기에 상약국의 인원수는 각 책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唐六典』와 隋唐史書에 기재된 숫자를 표 6과 같이 비교 정리하였다.

왕조	직책 문헌	典(奉)御	直長	侍御醫	司醫	醫佐	主藥	藥童	醫師	按摩師	咒禁師	書吏	書令師	書史	合口脂匠	掌固	直官	합계
隋代	唐六典	2	4	4	4	8	4	24	40	120	-	-	-	-	-	-	-	210
	隋書	2	4	4	3	불명	-	-	40	-	-	-	-	-	-	-	-	53
唐代	唐六典	2	4	4	4	8	12	30	-	4	4	-	-	-	불명	-	-	72
	新唐書	2	2	4	5	10	12	30	-	4	4	-	2	4	2	4	10	95

표 6 隋唐代 尙藥局的 구성 인원

120)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2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516.
 121)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2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530.
 122) 馬端臨 著. 文獻通考 卷25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15*59.

123)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50.
 124) 王溥 撰. 唐會要 卷6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831.
 125) 王溥 撰. 唐會要 卷6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832.

③ 尙藥局의 기능

상약국은 직위, 기술, 특기, 직책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이 다른 종합적인 병원이다. 최고 행정장관인 典(奉)御 역시 의학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奉御掌合和御藥及診候方脈之事, 直長爲之二 …… 合造之法, 一君三臣九佐 …… 凡合和與監視其分劑, 藥成嘗而進焉”¹²⁶⁾하는 기록이 있다. 즉 상약국 奉御가 친히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고 또한 직접 嘗藥하며, 直長은 봉어의 조수이다. “侍御醫掌診候調和”¹²⁷⁾하여 항상 황제의 신변에서 시중을 들고 병세를 관찰하며 御藥을 조제한다. 황제가 약을 복용함에 있어 아래에서 위에 이르기까지 층층이 약을 맛보는 제도가 있었다. “凡藥供御, 中書·門下長官及諸衛上將軍各一人, 與監·奉御泄之, 藥成, 醫佐以上先嘗, 疏本方, 具歲月日, 位者署奏. 餌日, 奉御先嘗, 殿中監次之, 皇太子又次之, 然後進御”¹²⁸⁾한다.

司醫·醫佐員은 “掌分療衆疾”¹²⁹⁾한다. 즉 왕과 귀족 및 대신 등 궁정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한다. 開元 5년(717년) 10월 2일에 (玄宗)이 칙령을 내리길 “ …… 王公以下, 不得輒奏請將外醫療.”¹³⁰⁾하게 하였다. “主藥·藥童主刮削搗篩”¹³¹⁾하고 飲片을 제작하였다. 掌固는 藏藥庫를 관리한다. 나머지 按摩師와 合口匠師 등은 각기 직책이 있다.

상약국은 이와 같은 정상적인 기능 이외에 다른 일을 맡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顯慶二年, 右監門府長史蘇敬上言, 陶宏景所撰本草, 事多舛謬, 請加刪補. 詔令檢校中書令許敬宗·太常寺丞呂才·太史令李淳風·禮部郎中孫志約·尙藥奉御許孝崇, 并諸名醫等二十人, 增損舊本. 徵天下郡縣所出藥物, 并書圖之, 仍令司空

李勣總鑑定之. 并圖合成五十五卷, 至四年正月十七一撰成. 及奏, 上問曰: 本草行來自久, 今之改修, 向所異也. 于志寧對曰: 舊本草是陶宏景合神農本草經及名醫別錄而注解之, 宏景僻在江南, 不能遍識藥物, 多有舛謬. 其所誤及別錄不書, 四百有餘種, 今皆考而正之. 本草之外, 新藥行用有效者, 復百餘種, 今附載之, 此所以爲勝也. 上稱善, 詔藏于秘府”¹³²⁾하였다. 이는 藥物學史에서 세 번째로 총결한 것이고 정부가 반포한 최초의 藥典이다. 책이 만들어지고 오래 되지 않아 일본에 전해졌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수당시대 상약국은 군주의 의료를 위주로 하였고 아울러 귀족과 대신의 의료를 관리하였으며, 藥典을 편찬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궁정 위생조직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첫째 순수한 궁정 御用의 성격이고, 둘째 각종 의약 인원을 갖추고 임상, 문헌 기능도 함께 갖추었고, 셋째 기구의 규격, 의관의 품계가 봉록이 비교적 높은 등 3가지 특징을 가진 황실병원이었다.

(3) 藥藏局的 구조와 기능

① 약장국의 연혁

약장국은 황태자의 의료보건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정부조직이 분화됨에 따라 궁정의 의관설치가 증가되고 직책의 구분이 점차 명확해지는 추세에 따라 발전되었다. 『隋書·百官上』에 南梁시대 詹事府 아래 “中藥藏局”¹³³⁾이 설치되었고, 동시에 “中藥藏丞”¹³⁴⁾이 “三品蒞位”¹³⁵⁾라 기재하였다. 간략한 기록이지만 이를 근거로 南梁에 약장국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음을 단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中藥藏丞은 태자의 의료를 위한 醫官이다. 北齊 때에는 門下坊에 약장국이 설치되어 있었다. 監 2인(正6品下)이 있고, 監 아래 丞·侍醫·侍藥 등의 관원을 두었다. “隋·唐官職更有規

126)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50.
 127)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50.
 128)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693.
 129)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693.
 130) 王溥 撰. 唐會要 卷50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645.
 131)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卷4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9*250.

132) 王溥 撰. 唐會要 卷8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254.
 133)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2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484.
 134)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2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490.
 135) 黃本驥. 曆代職官表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1*284.

定之太子官屬，號稱東宮官，與皇室各官相配。……東官事務官則以詹事府爲總漚，而置左春坊以比門下省，右春坊以比中書省……”¹³⁶⁾하였다. 隋代에서는 문하방에 약장국을 설치하고 監 2인이 있고, 監 아래에 丞·侍醫 등을 두었다. 唐·龍朔 2년에 문하방을 左春坊이라 하고 그 아래에 둔 藥藏局監을 太子藥藏郎(從 6品下)로 개칭하고 그 지위도 높아졌다.

② 약장국의 구조

수대 약장국에는 “正7品”¹³⁷⁾ 監 2명, “正9品”¹³⁸⁾ 丞 2명, “太子侍醫, 從七品”¹³⁹⁾ 4명을 두었다. 수대 약장국의 내에는 적어도 의관 8명이 있었다.

당대에는 藥藏局監을 “藥藏郎, 二人, 正六品上……丞二人, 正八品上.”¹⁴⁰⁾으로 바꾸었다. 이 이외에 侍醫, 典藥, 藥童, 書令史, 書史 등을 두어 의관 40명 정도였다. 의관의 숫자에 관하여, 문헌에 따라 오차가 있으므로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藥藏郎	丞	侍醫	典藥	藥童	書令史	書史	掌固	합계
唐六典	2	2	4	9	18	1	2	6	44
舊唐書	2	2	4	9	18	-	-	6	41
新唐書	2	2	4	2	6	1	2	4	23

표 7 唐代 藥藏局 인원표

③ 약장국의 기능

약장국은 태자의 건강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 장관인 藥藏郎은 “掌和齊醫藥之事, 丞爲之貳. 凡皇太子有疾命侍醫入診疾, 以議方藥. 應進藥, 命藥童

擣篩之, 侍醫和成之, 將進官監嘗如尙藥局之職.”¹⁴¹⁾이다. 나머지 의관들도 각자의 직책이 있다. 掌固는 약창고를 주관한다. 書令史 등은 태자의 병세와 용약 상황을 기록한다. 40여 명의 의관들이 황태자의 건강을 위해 배치되었다.

(4) 中宮의 의관과 조직

중궁 의관은 황후, 嬪妃, 궁녀 등의 건강을 책임지는 관원이다. 환관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원들은 모두 “中宮”이라 씌어 진 관을 쓰고 있었다. 보통 황후의 사무를 관리하는 관원은 大長秋(즉 皇后卿이다) 등에 예속되어 있었다. 중궁 의관의 설치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東漢 때에 大長秋에 속하는 관직에 이미 “中宮藥長一人, 四百石”¹⁴²⁾을 두었다. “章和以下, 中宮稍廣, 加嘗藥……皆六百石, 宦者爲之.”¹⁴³⁾하였다. 죄가 있는 황후나 귀인 등이 병이 들면 少府의 掖庭에 설치된 暴室에 요양시켰다. 北齊의 中侍中省에 中尙藥典御와 丞 그리고 中謁者인 仆射 2명을 두어 중궁과 後妃의 의약을 관리하였다.

南朝시대 齊·梁·陳에 모두 奚官승이 있어 宮人의 의약을 주관하였다. 北齊 때에는 長秋寺 아래 奚官署를 설치하여 승과 丞을 두었고 또한 “暴室局丞”¹⁴⁴⁾이 있었다.

隋代 초기 文帝 시기에 尙書, 門下, 內史, 秘書, 內侍 등 다섯 省을 설치했고, 내시성에 奚官局을 설치하고 승과 丞을 두었다. “煬帝即位……改內侍省爲長秋監,……長秋監署令一人, 正四品……領掖庭·宮闈·奚官等三署”¹⁴⁵⁾하였다. 唐代에는 내시성 아래에 “奚官局, 掌宮人疾病死喪”¹⁴⁶⁾하였다. 승은 2명 正8品

141) 張九齡 撰. 唐六典 卷26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595*253.
 142) 范曄 撰. 後漢書 卷3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430.
 143) 范曄 撰. 後漢書 卷36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52*428.
 144)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2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504.
 145) 魏徵 等奉勅撰. 隋書 卷2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4*533.
 146) 王溥 撰. 唐會要 卷6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835.

下이고 藥童 4명을 두어 飮의 일을 도왔다. 이밖에 尙食局에 食醫가 있어 “司藥·典藥·掌藥”¹⁴⁷⁾ 등이 제왕과 后妃의 의약을 책임졌다.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皇后, 嬪妃, 궁녀는 궁정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東漢 이래로 의관과 상응하는 의료 기구를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그 일을 맡았다.

(5) 중앙 및 궁정 의약기구의 기능에 대한 분석

隋唐五代는 위진남북조시대의 중앙 및 궁정의약기구의 설치를 계승하였고, 특히 北齊의 의약기구 설치경험을 계승하였고 의약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 기존에 있던 기구와 기능을 개편, 전환, 보강하여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의 의약행정관리기구와 궁정의 의약조직이 기능상에 있어서 두 가지의 체계를 형성한 점이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한편으로 의약행정관리기구인 太醫署가 의약 정령을 실제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정령은 대부분 황제가 공포했음) 기껏해야 황제의 醫藥詔를 책임지고 관철시키고, 防疫하는 약물을 제조하여 나누어주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본래 책임지고 있던 궁정의료의 기능도 이 시기에 尙藥局으로 넘어가 兩晉 이래로 태의서는 의약기구의 최고지위가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변천되어 수당오대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부정되었다.

그러나 의학교육은 이 시기에 흥성하여 태의서에 설치하였고 師·生·員·工의 인원수가 태의서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의학교육이 증설되고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태의서는 점차 의학교로 바뀌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군주를 위한 의료가 태의서에서 상약국으로 옮겨감에 따라 상약국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 지위도 따라서 높아졌다. 수당오대에는 太醫署의 관품이 보통 從7品이었으나 尙藥奉御는 보통 正5品下이었다.

또한 황제가 尙藥奉御를 높이 총애하는 詔를 계속 반포하였다. 唐·永徽 5년(654년) 8월에 “蔣孝璋除尙藥奉御, 員外特置, 仍同正員.”¹⁴⁸⁾하였다¹⁴⁹⁾. 唐·神

功 원년(697년) 10월 3일에도 “自今以後, 本色出身…… 醫術者, 不得高尚藥奉御.”¹⁵⁰⁾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밖에 상약국의 의관 봉록이 태의서의 의관 봉록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를테면 唐·大曆 12년(777년) 4월에 “度支奏給京百司文武官…… 每月料錢…… 太常卿六十貫文…… 醫學博士·太常鍼醫及醫監·尙藥局司醫各四千四百七十五文…… 殿中省醫佐·食醫·太常…… 醫正·按摩·咒禁·卜筮博士及鍼醫助教各一千九百一十七文.”¹⁵¹⁾이라 공포하였고, 唐·貞元 4년(788년) 正月에 “中書門下奏京文武及京兆府縣官據原給及新加每月當錢…… 太常醫博士及醫監尙藥局司醫…… 各四十文(본문의 ‘十’자는 ‘千’자의 오류로 본다.), 太常寺醫卜·按摩·咒禁筮博士及鍼醫助教各三千文”¹⁵²⁾이라 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상약국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 의관의 봉록도 따라서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상약국에서 일반 궁정 사람의 질병을 책임지고 치료하는 司醫의 봉록이 太常太醫署의 의학박사와 같은 것이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궁정 의약조직에서 상약국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위가 높아진 것 이외에 藥藏局과 中宮의 의약을 맡는 인원이 증가되었고, 그 관품과 봉록도 높아졌다.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隋唐五代시대에 중앙의 약관리, 의학교육, 궁정의료 등의 기구가 그 기능이 전환되고 충실해지면서 점차 완비되었다. 황제와 황족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상약국과 약장국의 지위가 제고된 것은 이 시기의 국가의료의 중점이 여전히 宮庭 내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地方醫政과 의학교육

148) 王溥 撰. 唐會要 卷6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8.

149) 員外는 이때부터 시작됨.

150) 王溥 撰. 唐會要 卷6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13.

151)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506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10*790.

152)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卷506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10*793.

147)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7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698.

隋代의 지방의정 설치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唐代에는 지방에 박사, 조교를 두어 백성의 치료를 관장하였다. 貞觀 3년(629년)에 의학을 설치하고 의약박사와 학생이 있었다. 開元 원년(723년) 7월에 玄宗이 이르기를 “神農嘗草, 以療人疾, 岐伯品藥, 以輔人命. 朕銓覽古方, 永念藜庶, 或營衛內壅, 或寒暑外攻, 因而不救, 良可嘆也. 今遠路僻州, 醫術全少, 下人疾苦, 將何恃賴. 宜令天下諸州各置職事醫學博士一員, 階品同于錄事. 每州寫本草及百一集驗方與經史同貯. 其諸州于錄事各省一員, 中下州先有一員者省訖, 仰州補熏散官充”¹⁵³⁾ 하라고 하였다. 玄宗의 이러한 조치로 지방의약의 설치를 강화하였다. 본초 처방과 經史를 함께 보전하여 의학의 지위를 제고시켰다. 그러나 “未幾, 醫學博士·學生皆省, 僻州少醫藥者如故. 二十七年(739년)復置醫學生掌州境巡療. 永泰 元年(765년)復置醫學博士. 三都·都督府·上州·中州各有助教一人. 三都學生二十人, 都督府, 上州二十人, 中州·下州十人.”¹⁵⁴⁾ 하였다. “諸州醫學生等, 且隨貢舉人例甲省, 補置十年與散官, 恐年歲深久, 檢勘無凭, 仍同流外例附甲”¹⁵⁵⁾ 하였다.

의학박사 職品의 높고 낮음은 州府의 규모와 관련이 있었다. 大都督府에는 의학박사 1명이 있고 八品 이상이다. 중, 소도독부에는 의학박사 1명이 있고 모두 正九品 이상이다. 上, 中, 下州에는 의학박사가 각기 1명이 있고 모두 九品 이하이다. 『新唐書』, 『舊唐書』, 『唐六典』 등의 문헌에 기록된 지방의학의 인원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으며,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상술한 의료인은 백성들의 질병을 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州府의 관료들을 위해서 복무하였다.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간에 唐代에 지방에 이러한 의료인을 둔 것은 전대에 비해 확실히 진보된 것이다. 이밖에 더욱 중요한 것은 당

州府	박사	조교	의학생		
			唐六典	舊唐書	新唐書
京兆·河南太原府	1	1	20	20	30
大都督府	1	1	15	15	20
中都督府	1	1	15	15	20
下都督府	1	1	12	12	20
上州	1	1	15	15	20
中州	1	1	12	12	10
下州	1	0	11	10	10

표 8 唐代 지방의학 인원수

대에 의학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이는 의약학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4) 患坊과 陵墓寺院의 의약

수당시기에 의료조직의 형태가 상당히 증가하여 일반 관원과 백성이 치료받는 조건이 점차 개선되었다. “宮人患坊有藥庫, 監門蒞出給. 醫師·醫監·醫正番別一人蒞坊”¹⁵⁶⁾이라 하여, 당대 태의서에는 일반 관원의 질병을 치료하는 “患坊”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의생들은 “患坊”을 돌아가며 일반관원들의 병을 치료하였고, 동시에 태의서 의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함께 하였으며, 또한 치료한 상황을 기록하여 “書其全之多少爲考課”¹⁵⁷⁾하였다. 위의 직책들 이외에 “환방”에는 “歲給藥以防民疾”¹⁵⁸⁾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대 태의서의 患坊은 일반관원의 병을 치료하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의학생들이 임상 기지였고, 또한 정부가 백성에게 의약을 내린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상약국, 약장국의 전문성과 御用성에 비해 患坊은 보편성과 민중성 측면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당대에 왕릉과 사원에 의약기관을 설치한 것도 의학의 민중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당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통일된 왕조로 근 300여 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唐朝에 왕릉과 사원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이에 소속된 사람의 숫자도 늘어났다.

153)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卷1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426*799.
 154) 王應麟 撰. 玉海 卷112 文淵閣四庫全書·子部·分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946*42.
 155) 王溥 撰. 唐會要 卷7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149.

156)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57)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58)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비교적 큰 왕릉인 昭陵과 乾陵 등에는 관원과 능지기의 총 인원수가 400여 명에 이르렀다. 왕릉을 관리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생활 및 보건시설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당대에는 “凡陵寢廟皆儲以藥，尙藥·太常醫各一人受之”¹⁵⁹⁾하였다. 여기에 “受”자는 “授”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며, 즉 왕릉의 약품은 상약국과 대상에서 파견한 의사를 통하여 공급하여 치료에 사용하였다.

天寶 10년(751년)에 “改獻·昭·乾·定·橋五陵署爲臺，升令品，…… 陵臺有錄事各一人…… 主衣·主輦·主藥各四人。”¹⁶⁰⁾이 있었다. “諸陵王·主衣·主輦·主藥…… 仍隸太常寺，其陵署若更有執掌，亦于此三色內通融驅使”¹⁶¹⁾하였다. 이러한 비교적 큰 陵臺에 醫官을 설치한 조치는 왕릉의 관원과 능지기들의 의료를 위해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官醫가 백성의 질병 치료를 겸하는 구조로 의약의 민중화 과정을 촉진시켰다. “至德 二年(757年)，兩京是各置普濟病坊，嗣後各州普遍之，多設于廟宇”¹⁶²⁾하였다. 이러한 病坊은 陵臺 의약의 민중화 수준보다 높은 평민 병원이라 할 수 있다.

수당시기에는 불교와 도교 등이 유행하여 통치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불교와 도교의 “功德”，“慈善”은 통치자가 선양한 “仁政”과 서로 호응하고 의술로 포교하는 활동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민중화된 의료조직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隋代 불교도인 那連提黎耶舍(589년에 사망)가 남긴 나병환자를 수용하는 癘人坊을 만들었다. 唐·釋道宣의 『高僧傳』에 “又收養癘疾，男女別坊，四時供承，務令周給”¹⁶³⁾하였는데, 이는 격리 병원이라 할 수 있다. 당대에는 “癘人坊”을 계속 설치하였는데, 『釋智

巖傳』에서 “釋智巖…… 後往石頭城癘人坊住，爲其說法，吮膿洗濯，無所不爲。永徽 五年(654년)…… 終於癘所”¹⁶⁴⁾라 하였다. 나병환자에 대한 격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보다 진보된 조치였다. 당대에 이르러 불교사원에 “悲田養病坊”을 설치하고 환자를 돌보았으며, 武后시기에는 정부가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했다. 武后 長安(701-704년) 이래로 癘人들은 사원에 소속되어 승려가 관리하였다.

開元 5년(717년)에 宋景이 이러한 病坊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玄宗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개원 22년(739년)에는 수도의 거지들도 병방에서 관리했다. 武宗 李炎은 “窮受道家之錄，服藥以求長年”¹⁶⁵⁾하였다. 이 때문에 會昌 5년(845년) “八月壬午，大毀佛寺，復僧尼爲民”¹⁶⁶⁾하였다. 같은 해 11월 甲辰일에 “悲田養病坊，僧尼還俗，無人主持，恐殘疾無以取給；兩京量給寺田賑濟。諸州府七頃至十頃，各于本管選者壽一人勾當，以充粥料”¹⁶⁷⁾하게 칙령을 내렸다. 武宗의 조치는 불교에는 불리했으나 養病坊을 공고히 함에 있어 적극적인 의미가 있었다. 불교와 도교 이외에 景教(기독교의 한 종파)도 이 시기에 의료 활동을 펼쳤다. 『大秦景教流行中國碑』에 “肅宗(756-762)…… 更效景門，依仁施利，每歲集四寺僧徒，虔事精供，備諸五旬，饑者來而飪之，寒者來而衣之，病者療而起之，死者葬而安之”¹⁶⁸⁾라 써어 있다. 많은 질병을 충분히 치료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의료 활동은 존재하고 있었다.

5) 隋唐五대의 軍醫 조직

隋代와 唐初에는 府兵制를 실시하고 開元시기에는 募兵을 실시하여 兵制가 다르기 때문에 군대의 의

159) 歐陽修，宋祁等奉勅撰. 新唐書 卷4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705.

160) 歐陽修，宋祁等奉勅撰. 新唐書 卷14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230.

161) 王溥撰. 唐會要 卷65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6*837.

16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65.

163) 智昇撰. 開元釋教錄 卷6 文淵閣四庫全書·子部·釋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1051*172.

16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65.

165) 歐陽修，宋祁等奉勅撰. 新唐書 卷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165.

166) 歐陽修，宋祁等奉勅撰. 新唐書 卷8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72*162.

167) 張昭遠等奉勅撰. 舊唐書 卷18上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268*422.

168)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66.

약 설치도 달랐다.

수대에 군대의 의약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唐初에는 중앙 군사 기구에 天策將軍府를 설치하여 의약행정을 책임지는 功曹가 있었다(『舊唐書』). 이밖에 都督府와 州에 설치한 의학박사·조교 및 의학생이 부대의 의료 업무를 겸하였다. 이러한 겸직제도는 후대에서도 계승되었다.

“唐太宗은 기원 636년에 전국 군대를 정비 확충하여 전국에 634개의 軍府를 설립했다 …… 군부는 또 折衝府라고도 칭했다.”¹⁶⁹⁾ 절충부에는 太醫·藥童·鍼灸·禁呪 등의 諸生이 모두 211명이 있었다. 평균 3개의 府에 겨우 한 명의 의생을 두었다. 그래서 지방 의생들에 의지하여 겸직으로 부대의 의료임무를 완수하였다. 唐·開元시기(713-741)에 募兵制로 바뀌었다. 趙蕤는 군대에 “方士二人, 主爲藥以全傷病因.”¹⁷⁰⁾ 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 기록은 군대에 의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어디에 의관을 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通典』에 나타난 李靖의 兵法에 의하면 군영마다 “檢校病兒官”¹⁷¹⁾을 설치하여, 다치고 병든 환자들의 상황을 순찰하여 치료하는 것을 책임졌다.

이상의 자료는 당대에 군대에 설치된 의약행정을 책임지는 관원에 대한 설명이다. 말단 군대에도 의약을 전담하는 소수의 인원을 두었다. 각 府州에는 지방 의생들이 군대의 의료 업무를 겸하여 관리했다.

五代十國시대에는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군대는 정권을 탈취하고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군대에 전임군의를 두었다. 後唐·清泰 3년(936)에 “勅所奏醫博士諸道合有軍醫, 許年諸補署 …….”¹⁷²⁾하였다. 軍醫라는 명칭이 이때부터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西晉시대에도 군의가 설치되어 있었다. 晉·高祖 天福 2년(973년)에 ‘금후부

터 전염병에 걸린 囚人이 있으면 바깥으로 쫓아내어 군의가 병을 살피도록 명하였다(『續通志』 卷144).’ 이로써 五代 後唐 이래로 군의의 설치는 이미 제도로 자리 잡아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수당오대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가 전반에 걸쳐 발전한 시기이다. 이 시기 醫政사업도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의약과 관련된 정책, 법령이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완비된 것 이외에도, 이러한 정책과 상응하는 의정 및 의료교육 등의 조직기구도 이때에 발전하고 완비되었다.

단계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중앙과 지방의 의약기구가 명확하게 구분 지어졌다. 중앙 의약기구는 정부 행정, 전국적인 교육, 궁중의 御用 세 가지 기구로 나뉘었다. 이 시기는 교육과 행정을 太醫署 한 부서가 총괄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태의서는 행정을 겸한 교육기관에 속했기 때문에 궁정 어용의 의약기구만큼 황제가 중시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상약국을 위주로 궁정의 의약을 위한 체계가 형성되었다.

尙藥局은 제왕의 의료보건을 위함이었고, 藥藏局은 태자의 의료 보건을 위함이었으며, 中宮醫는 后妃의 의약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기구는 황제와 황족들의 의료보건 임무를 함께 행하였다. 제왕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왕을 위한 의약기구가 국가 醫政기관과 의약교육 기관보다 지위가 높았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봉건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로써 봉건사회 통치자의 의약정책 진행방향이 역시 궁중의약을 강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궁중 의료에서 帝王, 太子, 皇后, 嬪妃의 의료보건이 가장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책방향은 이 시기의 의약조직기구의 형식과 규모, 각자의 기능과 임무 및 이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체계의 기능을 결정했다. 수당시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가 융성해진 것과 더불어 의정, 의료, 의학교육, 慈善 등의 기구와 제도가 점차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체 봉건사회의 의약기구, 제도의 틀이 이 시기에 완비되었다.

169) 王漢昌, 中國古代政治制度史略. 北京. 人民出版社. p. 130.
 170) 李昉 等奉勅撰. 太平御覽 卷299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895*696.
 171) 杜佑 撰. 通典 卷149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5*108.
 172) 王溥 撰. 五代會要 卷12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607*561.

4. 隋唐五代 의약정책과 의약발전과의 관계

수당오대시대는 봉건사회가 발전하여 융성해진 시기이고 동시에 의학발전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단계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의학발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病因症候學이 탄생하고 발전하였는데, 대표작으로는 隋·巢元方の 『諸病源候論』이 있다.

둘째. 임상의학의 풍부한 경험이 누적되어 孫思邈 등 걸출한 임상가와 『千金要方』·『千金翼方』 등 임상 의서가 탄생하였다.

셋째. 약물지식이 풍부해져 官修本草가 나오게 되었는데, 최초의 國家藥典인 『新修本草』를 반포했다. 그 영향을 받아 『本草拾遺』 등 특징에 따른 약물학 전문서가 이어서 나왔다.

넷째. 의약문헌을 정리한 작업을 통하여 王燾의 『外臺秘要』가 나왔다.

다섯째. 국내외 의학교육이 빈번해지고 연계관계가 밀접해지면서 학술 수준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성과는 주로 의학 자체가 발전하는 내부적인 규율의 결과이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이며 특히 정책적 작용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수당시기의 정책이 의학발전에 어떠한 작용을 하였을까?

1) 의학교육정책이 의학 발전을 촉진시킴

수당시기에 정부가 태의서에 의학 교육 기관을 설치한 정책은 의학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국가가 주관한 교육의 분과, 교육과정 설치, 스승과 제자의 비율, 임상실습 등의 분야 모두 정규적이었다. 학생 선발, 양성, 심사, 임용 등도 모두 제도로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의학 지식을 전파하고 의약 인재를 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분산되고 개인적이고 지역적이었던 의약지식을 교류하고 소통시켜 체계화, 규범화하였다. 의학교육을 일정한 표준에 의거함으로써 이론과 임상수준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겠다.

(1) 인재의 발굴과 양성

수당시대 의학교육은 이론과 임상에서 모두 능통한 의학전문가를 초빙하여 박사·조교 등의 업무를 담당시켰다. 이는 민간과 궁중에 흩어져 있던 의생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교육 특징도 초빙된 의생들에게 경쟁과 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직책을 맡는 사람의 선발에서 많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었다. A. D. 605-616 연간 隋代의 太醫博士·太醫수에 임용된 巢元方도 그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수많은 명의들과 함께 질병의 병인, 병리, 증후를 정리 연구하여 病因症候學을 만들었다. 巢氏는 A. D. 610년에 『諸病源候論』을 저작하여 의학사에 있어서 최초로 병인증후를 논술한 巨著로서 의학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

(2) 기술을 연마하고 이론을 규범화

정부 차원의 의학교육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학 이론과 임상의 규범화된 기제가 자발적으로 생겼다. 의학교육은 임상치료와 달라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교수 내용과 학술적 지표는 대부분 함께 연마하여 학술 권위자가 인정하거나 권위자의 참모인 관리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각자 특징이 있고 자체의 체계를 갖춘 스승과 제자의 전수제도와는 달리 교과과정의 설치, 수업시간의 수, 기본이론과 기술의 상대적인 표준에 대한 해석과 조작 등에 대해 모두 반드시 인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학생에게 전수하는 지식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규범화되었다.

둘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도움을 준다. 교수가 전수하는 지식은 학생들이 반드시 피드백 하게 된다. 기본적인 학술관점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엄격하게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혹시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몇 번의 피드백을 통해 일치시켰다.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은 의학교육이 반드시 규범화 되어야 하는 운명을 결정한다. 의약이론의 규범은 교

수는 신빙성이 있게 하고, 학생은 의거하는 바가 있게 하고, 교류에 근거가 있게 하고, 시험에는 표준이 있게 하였다. 이 시기 이론의 규범화는 초기단계였지만, 이러한 초보적인 규범화는 수당시대 이전 정부와 민간에서 전수된 의학지식의 수준을 제고시켰다. 따라서 수당시대의 의학교육은 이후 의학발전에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2) 국가가 주관한 약학교육과 官修本草 정책은 약물학의 진보를 촉진

(1) 정부가 주관한 약학교육은 약물학의 지위를 확립

수당시대 태의서에 의학교육이 설치된 것 이외에 약학교육을 설치하였다. 약학교육의 발전은 마찬가지로 약학을 위한 대량의 전문 인재를 기르고 약물학 지식을 정리하고 규범화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약학교육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약물학의 지위를 초보적으로 확립했다는 것이다.

약물학의 발전은 오랜 세월을 거쳤지만 醫藥은 同源으로 학과의 한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아 종종 의학으로 약학을 통칭하거나 의학을 합하여 칭하였다. 東漢시대에는 태의령 아래에 藥丞을 설치하였고 『神農本草經』이 나왔지만, 이 시기에 醫와 藥은 학술적으로 각자 편중되어 있었고 관리상으로 다소 분업을 이루고 있었을 뿐 여전히 독립된 두 학과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현대에 학과 독립에 관하여 3가지 기본조건이 있다. 첫째, 정부 측의 승인이다. 둘째, 대학에 전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된 학술잡지가 있어야 한다.

수당시대에는 태의서에 약학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였고 그와 동시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조건은 현대 학과독립의 조건에 가깝고 이런 의미에서 수당시대 약학교육이 약물학의 학과지위를 초보적으로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의 약물학은 분명 진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가 本草를 修正하여 약물학 발전을 촉진

시킴

수당 이전에 약물과 관련된 지식의 누적과 정리는 모두 민간 개인의 노력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東漢의 『神農本草經』 및 남북조시대에 陶弘景의 『本草經集注』 등 두 번에 걸쳐 전면적으로 총결하여 수준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한계와 개인의 역량과 조건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도홍경이 쓴 본초에는 여전히 누락과 착오가 많았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唐·高宗 顯慶 연간에 司空 李勣이 총감독을 맡고 蘇敬 등이 본초의 편수를 주관하였다. 정부가 편수를 주관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郡縣에서 생산된 약물은 행정명령을 통해 공급 받았다. 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쉽게 해결되었기에, 이때에 편수된 『新修本草』는 이전의 본초서에 비해 내용이 충실해졌다.

이 밖에 唐 정부는 이를 國家藥典으로 삼아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당 정부가 본초를 수정하여 반포한 것은 정부가 약물학에 대해 중시하였음을 반영한다. 이 조치는 본초를 다루는 직업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며, 또한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도 제고되었다. 이러한 의의에서 보면 당 정부가 본초를 수정한 정책은 약물학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책의 시범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본초 약물학의 연구와 정리 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이 시기에 수많은 본초서가 탄생되었다. 예를 들면 陳藏器的 『本草拾遺』, 韓保昇의 『蜀本草』 등 약 30여 부에 이른다.

(3) 문화교류의 지원 정책은 의학의 전파와 번성을 촉진시켰다

당대에는 영토를 확장하여 외국과의 교통을 촉진 시킴으로써 경제문화교류에 조건을 만들었다. 사회경제가 공전의 번영을 구가함으로써 광범한 문화교류를 위한 경제적인 기초가 되었다.

특히 당대 초기에 정부는 외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의학교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것이 빈번하였는데 한반도와 일본 등에서 중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일본에서는 학자를 초빙하자 정부가 이를 지원하였다.

唐·開元 21년(733년)에 일본의 승려 榮春·普照 등이 당으로 유학하여 鑑眞을 일본으로 초빙하였다. 鑑眞은 天寶 12년(75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일본에 전파하였는데, 일본은 그를 의학의 시조로 받들었다. 의학교류는 晋代에 이미 시작되었다.

당대에 이르러서는 『黃帝內經』과 『傷寒論』이 한반도에 전해졌다. A. D. 693년 三國時代에 醫學博士가 설치되어 의학을 전수하였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新羅白附子” 등과 같은 약물이 중국으로 전해졌다. 당대에는 越南과의 의학교류 역시 빈번하였다. 沈香、蘇合香 등 香科가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중국과 인도와의 의학교류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 東漢말기에 인도 의학이 불교를 따라 중국으로 전해졌다. 당대에 “長生”의 術이 성행하여 당 태종이 인도 방사인 那羅邇婆娑에게 명하여 장생불노의 仙藥을 제조하도록 명하였다. 高宗시대에는 天竺盧迦多를 맞아들여 사방에 약물을 구하였다. 이 시기에 인도 의사가 중국에서 개업을 했고 그 중에서 眼科가 특히 앞섰다. 불교 교리가 당시 의학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孫思邈의 『天金方』에서 “凡四氣合德, 四神安和, 一氣不調, 百一病生 ……”¹⁷³⁾이라 하였다.

이와 동시에 人蔘、茯苓 등의 약물이 인도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당시 당의 영토가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서방국가들과의 의학교류도 매우 빈번하였다. 아라비아, 페르시아, 서역제국은 매년 “天朝”에게 藥方과 약품을 바쳤다. 大秦 즉 동로마와도 의학교류를 하였다.

A. D. 629년에 티베트의 松贊干布가 당나라 왕조와 혼인을 요청하자 貞觀 15년(641년) 당의 文成공주가 시집을 가면서 “40가지 병을 치료하는 醫方 100종, 진단법 5종, 의료기계 6종, 醫學論著 4종”¹⁷⁴⁾을 가져갔다. 景龍 4년(710년)에 金城공주가 또한 吐蕃 왕조의 제4대 왕인 赤德祖讚에게 시집을 갈 때 대량의 의학서적을 가지고 갔다. 이러한 의서는 대부분 티베트 언어로 번역되었고, 티베트에 널리 유전되었다.

173) 孫思邈 撰. 備急千金要方 卷1 文淵閣四庫全書·子部·釋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p. 735*20.

174)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70.

다.

제5대 왕인 赤松德贊(754-797)이 즉위한 뒤 醫僧인 善攄와 왕실의 侍醫인 比吉·贊巴希拉 등이 합작하여, 『漢地脈診妙訣』 등 30여 편의 의학저작을 편찬하였다. 赤松德贊은 일찍이 명인들이 쓴 저작을 티베트 언어로 번역할 것을 명하였고, 또한 9명의 청년을 선발해서 티베트에 머물고 있는 唐 醫僧인 東松嘎瓦를 따라 의학을 배우게 하였다. 그 가운데 宇陀·貢布는 후에 시의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티베트 의학서적인 『四部醫典』을 편찬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의 문화교류정책은 당시 의학이 널리 전파되게 하였고, 또한 외래 의학을 부단히 흡수하여 더욱 번창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3) 정부가 주도한 의서의 편찬

수당오대시기 정부는 典籍의 주해와 의학서의 편찬 작업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부가 주관하여 편찬, 주해한 의서가 비교적 많았고 또한 개인이 저술한 의서도 많이 늘어났다. 隋代 의가인 楊上善은 일찍이 太醫에 임명되어 칙령을 받들어 『內經』을 주해하여 『黃帝內經太素』(일설에는 唐初에 칙령을 받들어 주해하였다고 전함)를 편찬하였고, 巢元方 등으로 하여금 『諸病源候論』 50권을 편찬하게 하였다.

수당오대에 정부가 편찬한 의서에는 『四海類聚方』 2600권, 『新修本草』 54권, 『蜀本草』 20권 등이 있다. 정부가 의서를 편찬하고 전적을 주해한 행위가 개인이 의서를 편찬하고 주해, 정리하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끼쳐 개인적인 저작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후세에 전해지는 의서로는 孫思邈의 『天金要方』과 『天金翼方』 각 30권, 王燾의 『外臺秘要』 40권, 王冰이 정리, 주해한 『黃帝內經素問』 24권 등이 있다.

이로써 수당오대시기에 정부와 개인이 의서를 편찬, 정리, 주해한 작업은 의학문헌의 유전을 촉진시켰고, 송대에 校正醫書局을 설치하여 문헌을 정리하는 기초가 되었다.

5. 수당오대 의정의 평가와 형성원인

1) 수당오대 의정의 평가

수당오대시대에는 의학발전과 관련된 정책, 기구, 제도 등이 점차 완비되었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판단의 전체 하에서 말하자면 이 시기에 정부가 의학 교육을 발전시킨 정책은 이 시기 醫政의 성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정규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이 시기에 전공의 설치, 교육과정의 안배, 임용시험 등 여러 부분에서 의학교의 규모를 대체로 갖추었고, 이는 의학전문인재를 정규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서 의학지식을 조직적으로 광범하게 전파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정규적인 의학교육 이외에 지방 의학교육 및 여러 형식의 의학보급에도 공전의 발전을 이루었다. 각 州마다 의학박사와 의학생을 두었는데, 비록 存廢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의학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런 조치가 의생의 양성과 의학지식의 전파 및 보급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이외에 정부가 醫方을 반포하고 지방의 要路에 처방을 내린 조치는 빈곤한 백성들의 의료에 큰 편의를 제공하였고 의학지식의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본초학을 중시하여 그 지위를 제고시킨 것이 이 시기 의정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태의서에 의학교육을 설치함과 동시에 약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였다. 師·工·生과 실습기지인 藥園 등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약물 전문 인재의 양성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 이외에 정부는 전문인을 조직하여 본초를 편수하여 정부의 명의로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최초의 藥典이 되었고, 이는 약물지식의 수집과 정리, 용약의 규범에 대해 상대적으로 통일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開元시기에 玄宗이 각 州에 명하여 本草 驗方을 편찬하여 經史와 같이 보관하게 한 조치는 본초 약물학의 지위를 한층 제고시켰다. 수당 정부가 본초약물을 중시한 것은 당시 약물지식의 정리와 전파를 추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대 정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수당오대의 의정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향의 성공적인 경험 이외에 의약관리 방향의 초보적인 법제화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수당 이전에는 의약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다.

수당오대시기에는 황제의 의약 詔슈이 의약발전의 외재적인 준칙이었지만, 이 시기에 제정한 의약 방향의 법률제도 또한 어느 정도 작용을 하였다. 의생은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의 광범한 환자와 연계를 가졌고 또한 일정한 법률로 자신을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거나 심지어 형을 받아야 했다. 의약방면 법률의 제정은 量刑을 결정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생에게 비교적 규범화된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이는 의생의 관리업무에 임의적인 임용과 상벌에서 벗어나 법제화 차원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당오대의 의정은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봉건사회의 의정이 이 시기에 점차 완비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의정에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궁정의약기구의 규모가 방대하였고, 인원이 쓸데없이 넘쳐났으며, 궁정의관이 역압을 받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백성을 위한 의약기구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의학에 대해 수준에 걸맞게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생의 지위는 여전히 높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은 수당오대 정부의 의약정책 방향이 여전히 봉건사회의 의약정책 방향의 전체 규율에 따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즉 군주와 궁정의약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다.

비록 수당시기의 의정이 성공적인 측면을 다른 왕조의 의정과 서로 비교하자면, 절대적인 의미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경험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총결한 결과는 오늘날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수당오대 의정형성의 원인

수당오대시기에 봉건사회의 의정이 급속하게 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원인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를 건립한 이래 수당 이전까지 근 800여 년 동안 역사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의정은 진한시기에 기초가 다져지고, 위진남북조 시기에 탐색과 발전을 거치면서 그 조직기구의 틀이 초보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중앙과 지방 두 계층의 의정이 기본적으로 명확해졌고, 궁정의약기구인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각 기구가 각자의 작용을 발휘하면서 통치자의 의약을 위한 전체적인 기능을 공동으로 완수하였다.

민간에는 醫方의 반포, 의학교육의 전개, 의약도량형의 통일, 평민을 위한 의료시설의 설립, 방역조치의 제정 등 그 실마리를 나타내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경험을 쌓았다. 수당오대 의정은 상술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 점차 수립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수당오대 의정이 실현되어 하나의 틀이 형성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다.

첫째. 정치적인 원인이다. 수당시기에 국가가 다시 통일을 이루어 중앙집권 통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정치의 안정으로 국가기구가 점차 수립되고 완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앙의 의정 관리와 궁정의료 등의 기구도 상응하여 충실해지고 완비되었다. 國子監에 律學이 설치되고 隋律, 唐律의 탄생으로 의약관리가 법제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외국과의 교역으로 진귀한 약물들이 들어옴으로써 약물지식 역시 매우 풍부해졌다. 통치자들은 文治를 표방하고 仁政을 선양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의약으로 구휼하고, 풍속을 고치고, 역병을 예방하고, 백성에게 의약을 제공하고, 사원에서 약을 나누어주는 것을 허락하고 심지어 승려들이 출국하여 의약지식을 전파하는 것 등 일련의 조치를 허가하였다. 과거제도의 발전도 의생의 임용시험제도가 완비되도록 촉진시켰다.

둘째. 경제적인 원인이다. 수당오대시기 정부가 의학교육을 창설하고, 궁정 의관을 계속 보강하고, 의

약을 나누어주고, 撫恤을 베푸는 것 등은 경제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 시기에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에 경제도 비교적 번영하게 되었다. 본초를 수정하고 의서를 주해, 정리, 편찬하는 등 인력과 재력이 드는 것은 정부가 능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각 방면의 의정사업이 시작되고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정부가 풍부한 경제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셋째. 사상문화적인 원인이다. 수당오대시기에 자연과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사람들은 神仙妖巫의 미혹에 대해 일정한 방어능력이 생겼다. 비록 일부 몇몇 황제들이 神仙巫術에 심취한 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醫政사업은 神仙巫術에게 받은 영향이 비교적 적었다. 이 시기에 유교, 도교가 부흥하고 유생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은 의술을 겸하여 배워 儒醫가 되었다. “자식이 되는 자는 음식과 약을 맛봐야 하고 방술을 모르면 어찌 효자라 할 수 있겠는가?”¹⁷⁵⁾라는 유가의 윤리사상이 이때에 나타났다. 유가, 도가 색채가 농후한 孫思邈의 醫德사상도 이 시기에 생겼다. 풍속을 고쳐 유골을 매장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구휼하는 시책도 유가의 “仁”의 사상에서 제정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당오대에 의정이 점차 완비된 것은 이 시기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문화의 번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결 론

隋唐五代시대에는 의학발전과 관련된 정책, 기구, 제도 등이 점차 완비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가 의학 교육을 발전시킨 정책은 醫政의 공적이라 할 수 있다. 정규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전공의 설치, 교육과정의 안배, 임용시험 등에서 의학교의 규모를 갖추었고, 이는 의학전문 인재를 정규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써 의학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175)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p. 73.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정규적인 의학교육 이외에 지방의학교육과 의학보급도 발전하였다. 각 州마다 의학박사와 의학생을 두어 의학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조치가 의생의 양성과 의학지식의 전파에 큰 영향을 끼쳤다. 醫方을 반포하고 지방의 要路에 처방을 내린 조치는 백성의 의료에 큰 편의를 제공하였고 의학지식의 보급에도 영향을 끼쳤다.

본초학의 지위를 제고시킨 것이 이 시기 의정에서 두드러지는 성과이다. 태의서에 의학교육을 설치함과 동시에 약학교육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였다. 師·工·生과 실습지인 藥園 등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약물전문 인재의 양성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본초를 편수하여 정부의 이름으로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최초의 藥典이 되었고 이는 약물지식의 수집과 정리, 용약의 규범을 통일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의정에서 의약관리 방면의 법제화도 큰 수확이다. 수당 이전에는 의약관리와 관련된 제도와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다. 의생은 일정한 범률에 의거하여 환자와의 연계를 가졌고 또한 범률로 자신을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거나 심지어 형을 받아야 했다.

수당오대 의정은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고대사회의 의정이 이 시기에 점차 완비되었다. 그러나 궁정의약기구의 규모가 방대하였고, 인원이 과잉되었으며, 궁정의관은 규제를 받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백성을 위한 의약기구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의학에 대해 수준에 걸맞게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생의 지위는 여전히 높지 못한 것이 이 시기 의정의 결점이다. 이 시기의 의학이론 분야에는 그다지 성과가 없었지만 임상 각과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IV. 참고문헌

<단행본>

1. 孫思邈. 孫真人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

社. 1996.
 2. 梁峻. 中國古代醫政史略.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95.
 3. 黃本驥. 歷代職官表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4. 孫人龍 撰. 晉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5. 李昉 等奉勅撰. 太平御覽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6. 魏徵 等奉勅撰. 隋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7. 王溥 撰. 唐會要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8. 歐陽修, 宋祁 等奉勅撰. 新唐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9. 劉肅. 唐新語 文淵閣四庫全書·子部·小說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0. 張昭遠 等奉勅撰. 舊唐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1.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文淵閣四庫全書·史部·詔令奏類議.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2. 李林甫 等撰. 唐律疏義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3. 仁井田陞 著. 唐令拾遺.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
 14. 張九齡 撰. 唐六典 文淵閣四庫全書·史部·職官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5. 范曄 撰. 後漢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6. 王溥 撰. 五代會要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7. 薛居正 等奉勅撰. 舊五代史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8. 歐陽修 撰. 新五代史 文淵閣四庫全書·史部·正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9. 劉於義 等監修. 陝西通志 文淵閣四庫全書·史部·地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0. 馬端臨 著. 文獻通考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1. 李昉 等奉勅編. 文苑英華 文淵閣四庫全書·集部·總集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2. 曹仁虎 等奉勅撰. 續通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3. 曹仁虎 等奉勅撰. 欽定續通志 文淵閣四庫全書·史部·別史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4. 杜佑 撰. 通典 文淵閣四庫全書·史部·政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5. 王欽若, 楊億 等奉勅撰. 冊府元龜 文淵閣四庫全書·子部·類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6. 王應麟 撰. 玉海 文淵閣四庫全書·子部·分書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7. 智昇 撰. 開元釋教錄 文淵閣四庫全書·子部·釋家類.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28. 唐志炯. 唐宋醫事律令. 醫學史與保健組織. 1958(4).
29. 王漢昌. 中國古代政治制度史略. 北京. 人民出版社.